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6281

2017년 8월

석사학위 논문

개인정보 침해의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허 준 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개인정보 침해의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medies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2017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허 준 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개인정보 침해의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지 도 교 수 김 명 식

이 논문을 법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4월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법 학 과

허 준 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허 준 호 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박 용 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김 병 록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김 명 식 (인)

2017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국문초록)

개인정보 침해의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헌법 전공
허 준 호
지도교수 : 김 명 식

오늘날 우리는 고도로 발전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 생활을 소위 '스마트'하게 만들고 있으며, 편리하고도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기반이 되는 '정보'의 수집·취합은 개인정보주체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나, 유출 및 오·남용 등의 침해로 인하여 개인정보주체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침해는 여타침해와 달리 개인정보주체의 인격권 및 명예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고, 다수의 사람과 다량의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그 피해의 규모가 크며, 금전배상으로도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을 규정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를 법제화하였다.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방안으로써 금지청구권이 있으며, 사후적 구제방안으로써 손해배상청구 및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의 변경(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이 존재한다. 한편, 손해배상청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소송의 경우는 그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모되는 바,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할 필요성이 존재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제도개선 및 손해배상 등의 합의를 권고하고, 이를 승낙하게 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게 된다.

이러한 사전적·사후적 구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에 제약을 받고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침해 구제법제에 관한 문제점으로 개인정보 개념 및 분류의 불명확성,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개인정보 단체소송에서의 전치화,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무과실책임 부재 및 손해배상의 상한액 규정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집단소송의 도입 또는 개인정보 단체소송 관련 사항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조직 개편, 행정자치부장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명령 및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또는 예탁제도의 운영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꾸준히 발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정안이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개인정보주체의 완전한 권리 구제에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등급을 설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정도의 규정 및 개인정보 침해의 발생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확정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전치주의로써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위한 개정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고,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책임을 완화하고, 상한액을 폐지하는 등의 개인정보주체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에 대한 구제는 점차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정보'의 가치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도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일 것인 바, 입법자, 학계, 실무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 주 제 어 》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 구제,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손해배상,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단체소송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 i
표 차례 ····· viii
그림 차례 ····· ix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제2장 개인정보 일반론 ····· 4

제1절 정보화 사회와 개인정보 ····· 4

1. 정보화 사회의 개념 ····· 4

2.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 ····· 5

가.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 6

나. 핀테크와 개인정보 ····· 9

다. 스마트 의료/헬스케어와 개인정보 ····· 11

라.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 13

제2절 개인정보의 법적 근거 ····· 15

1. 헌법적 근거: 개인정보자기결정권(프라이버시권) ····· 1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등장 ····· 15
나.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7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의 내용 ····· 17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 19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례의 입장 ····· 21
2. 법률적 근거 ····· 22
가.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 22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개인정보 ····· 23
다. 기타 개인정보 관련 특별법 ····· 25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 개인정보 ····· 25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개인정보 ····· 27
제3절 개인정보의 가치 ····· 29
1.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 ····· 29
2. 개인정보수집의 적정성 인식 ····· 30
3.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관한 인식 ····· 31
제3장 개인정보의 침해 및 현행 구제법제 ····· 33
제1절 개인정보 침해 및 대응 ····· 33
1. 개인정보주체의 침해 및 대응 유형 ····· 33
가. 개인정보 유출 사례 ····· 33
나. 개인정보 침해 대응 ····· 3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사전적 보안 ····· 35
(2) 사후적 대응 ····· 38
2.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침해 및 대응 사례 ····· 39
가. 개인정보 유출 사례 ····· 39
(1)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 40
(2) '여기어때' 어플 사건 ····· 41
(3) ㈜KT 해킹 사건 등 ····· 42
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응 활동 ····· 43
제2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침해 구제에 관한 법제 ····· 47
1. 구제의 필요성 ····· 47
2. 현행 개인정보 침해 구제 체계 ····· 49
가. 사전적 구제방안: 금지청구권 ····· 49
(1) 금지청구권의 인정 ····· 49
(2) 금지청구권의 행사 ····· 50
나. 사후적 구제방안 ····· 51
(1)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51
(2) 개인정보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 52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 ····· 55
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요 ····· 55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55
(2)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 56
나. 개인정보 분쟁조정 현황 ····· 5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조정 사례 ····· 59
(1)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59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 61
(3)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 62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 63

제4장 개인정보 침해 구제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65

제1절 개인정보 침해 구제법제의 한계와 문제점 ····· 65
1. 개인정보 개념 및 분류의 불명확성 ····· 65
2. 개인정보 단체소송과 분쟁조정제도의 관계 ····· 67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문제 ····· 68
가. 무과실책임의 부재 ····· 68
나. 손해배상금액의 확정 ····· 69
제2절 개인정보 침해 구제 논의 ····· 71
1. 집단소송의 도입·단체소송 관련 개정 ····· 72
가.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안과 이상직의원 대표발의안 ····· 72
나. 변재일의원 대표발의안 ····· 72
다. (새누리당) 권은희의원 대표발의안 ····· 73
라. 이상민의원 대표발의안 ····· 73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권한 강화 및 조직 개편 ····· 7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 ····· 74
나. 변재일의원 대표발의안 ····· 75
다. 조원진의원 대표발의안 ····· 75
라. 강은희의원 대표발의안 ····· 76
3. 손해배상 관련 ····· 77
가.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안과 이상직의원 대표발의안 ····· 77
나. 박대동의원 대표발의안 ····· 77
제3절 개인정보 침해 구제법제의 개선을 위한 제언 ····· 78
1. 개인정보 등급의 설정 ····· 78
2. 「개인정보 보호법」 상 쟁송제도의 개선 ····· 79
가. 단체소송제도의 개선 ····· 79
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개선 ····· 83
(1) 손해배상책임 관련 입법안에 관한 제언 ····· 83
(2) 과실책임의 확장 ····· 84
(3) 손해배상금액의 책정에 관한 논의 ····· 86
제5장 결론 ····· 88
참고문헌 ····· 91
영문초록 ····· 9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차 례>

<표 1> 핀테크 산업 분류 ····· 10
<표 2> 개인정보의 유형 및 구체적 예시 ····· 24
<표 3> 개인정보 수집의 적정성 ····· 30
<표 4> 개인정보 침해 신고 유형(연도별) ····· 34
<표 5> 정보보호 제품 비이용 원인(성별, 연령별) ····· 36
<표 6>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현황(연도별) ····· 57
<표 7> 개인정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 예시 ····· 65
<표 8>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비교 ····· 8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림 차 례>

<그림 1> 글로벌 빅 데이터 시장 예측(2013년~2018년) ····· 7
<그림 2>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구분 ····· 28
<그림 3>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 ····· 29
<그림 4> 스마트 기기 보안 예방조치 ····· 37
<그림 5> 개인정보 침해 사후적 대응 경험 ····· 38
<그림 6> 개인정보 암호화 현황(개인정보보호위원회) ····· 45
<그림 7> 개인정보 암호화 현황(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 4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체감할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 IoT시대, 빅 데이터 시대 등 현대사회를 표현하는 방법이 낯설지 않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그 존재자체로 유용하며, 이를 융합·결합 및 재구성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인공지능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산업이 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기술은 미래의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 및 기술 개발 등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을 소위 '스마트'하게 만들고, 편리하며 윤택하게 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일상적인 정보는 물론 개인정보주체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및 산업에 있어서 고객을 유치하고,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바, 각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포털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성명, 성별, 연령, 연락처 등을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주체가 로그인을 통하여 검색한 내역 등을 취합하여, 쇼핑에 있어서 관심이 있을 것 같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볼 수 있게 하거나, 해당 품목에 있어서 쿠폰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주체의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관함으로써 개인정보주체에게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음에 반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보관함에 있어서 쉽게 해킹당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사용하거나 내부자들에 의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본인의 개인정보가 다른 목적·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2011년 3월 대한민국국회에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구별하지 않고, 개인정보에 있어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 9월에 시행되었다. 동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에 있어서 하여야 할 조치,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규정하며, 개인정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유출, 오·남용 등의 문제로 개인정보주체의 침해가 발생했을 시, 그의 구제방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침해는 개인정보주체의 인격권 및 명예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여타 다른 침해 및 피해와 달리, 금전적으로 배상으로 완전한 치유가 어렵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1~2인의 개인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의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그 침해 발생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를 재가공하여 작게는 광고성 스팸 문자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수신하거나 크게는 보이스피싱, 차명계좌의 개설 등 범죄행위로까지 개인정보주체의 정보가 활용될 수 있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도 해킹 또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 등으로 고객(개인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해당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 상당한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고객들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기업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며, 경쟁업체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표류된 고객들을 유치하고자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는 개인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중요하고 그 심각성을 인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구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통하여 법률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응과 개인정보보호와의 조화를 통한 입법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에 있어서의 구제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국내·외의 문헌 자료 및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부기관의 자료의 수집 및 검토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는 단행본, 논문, 정기간행물 등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본 자료들의 수집·분석하는 문헌 중심적 방법을 택하였다. 특히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고, 침해의 위험성에 대하여 대비하는 등의 역할이 큰 중앙행정기관, 준정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기관, 시민단체 등이 발간한 정책연구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 외에도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언론보도,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도 참고하였다.

제2장에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전체적 개요로써 오늘날 우리가 소위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는 세상에 대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며,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 분야 중 빅 데이터 분야, 스마트 의료 및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 핀테크 분야, 인공지능 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하여 각 개별법에서 개인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관련 법령과 사례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시대에서 개인정보가 어떤 정보를 가지며, 개인정보주체는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 있는지의 소개를 통하여 본 논문의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개인정보의 침해 유형 및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첫째,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침해·피해의 방지를 위한 사전적인 조치 또는 침해·피해 발생 이후의 대처 등에 대한 현황을 설문된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전술하였듯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타격이 존재하는 바, 최근 발생하였던 개인정보 관련 사건 중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던 주요 사건을 소개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전 대응 방안을 하였고, 사후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상 실현될 수 있는 구제법제를 소개하고, 개인정보 침해 구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에 관하여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소개하였던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에 있어서 문제점을 ①개인정보 개념 및 분류의 불명확성, ②단체소송과 분쟁조정제도의 관계, ③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 및 법률안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주체의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일반법으로써 역할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써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침해 구제방안에 관하여 정리하며, 관련 법령의 개선 방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장 개인정보 일반론

제1절 정보화 사회와 개인정보

1. 정보화 사회의 개념

오늘날 사회를 흔히 '정보화 사회'라고 부른다. '정보화 사회'는 컴퓨터, 멀티미디어 및 통신 분야의 발전·발달로 인하여, 파생된 개념으로써 다른 재화 또는 에너지 이상의 유력한 자원으로써 다양한 정보의 생산 및 전달이 중심축이 되어 전개되는 탈공업화 사회를 의미한다.[1] 우리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에서도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동법 제127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대통령이 이를 위한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정보가 제3의 자원이 되며, 하나의 부로써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개념은 기술적 영역 등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속성을 포괄하고 있는 복합적인 개념으로써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2] 우리는 '정보사회', '정보화' 등 다양한 용어로 정보화 사회를 표현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개념에 대하여는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를 정의하는 것으로써 첫째, "현실세계를 해석하는 아날로그적 정보(수기처리정보)로부터 사이버공간에서 이해되는 디지털정보(컴퓨터처리정보)로 변환함으로 이루어지는 정형성, 순간적·대량화된 이동성을 지닌 표준화된 정보를 컴퓨터 네트워킹과 인터넷을 통해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정보사회라고 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질서를 가진 국가를 정보국가로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3]

둘째, 공업제품의 생산·가공보다는 정보 자체의 생산·가공·처리가 더 많으며, 그 가치에 있어서도 보다 중요한 사회이자 정보가 2차 산업사회에서의 에너지 또는 3차 산업사회에서의 서비스보다 더 중요한 자원으로 역할하며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를 정보화 사회로 보는 견해가 있다.[4]

---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p.450.
2) 문학비평용어사전-정보화 사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839&cid=41799&categoryId=41800(최종방문일: 2017.04.07.).
3) 강경근, 「헌법학」, 법문사, 2004., pp.220-22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셋째, 정보를 생산도구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로써 사회경제활동이 서비스 및 새로운 정보·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함으로써 운영이 되는 사회로 보는 견해가 있다.[5)]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궁극적으로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이 활용되는 것을 '정보화 사회'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주요국에서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정보사회의 구현에 있다고 인식하며,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범위의 확장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등장에 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사이버공간이 마치 제5의 영토로 불릴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6)]

2.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

정보화 시대의 도래 초기에는 기술적인 정보가 가장 중요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생산수단 또는 무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보유함으로써 권력과 부를 유지·증대시키는 역할로서의 정보만을 중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인터넷을 통한 서치 및 통계의 확보 등 구체적이며 정확한 정보의 수집, 분석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즉, 과거의 정보가 물질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존의 정보로 권력과 부를 향유할 수 있었던 반면, 오늘날의 정보는 기본적인 정보의 가치보다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것에 보다 큰 가치를 두고, 이를 적정·적합하게 활용하는 것이 권력과 부를 향유하는 방법이 되었다.[7)]

과거의 개인정보의 경우는 단순히 우리 국민들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한 역할로서만 존재하였다. 이후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는 본인의 확인을 위해서 점차 중요시되며 개인정보에 관하여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의 기술이 발전하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점차 본인에게 적합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며, 스스로 정보를 창출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케팅 및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등이 가능해지며, 개인정보가 하나의 수단으로써 역할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와 네트워크 환경이 좋아지면서 정보의 취합 및 활용이 증

4) 변재옥, 「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p.142.
5) 한상완, 「정보사회의 전개와 정보이용」, 구미무역주식출판부, 1997., p.25.
6) 국가정보원·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행정자치부, 「2016 국가정보보호백서」, 2016.04., pp.24-25.
7) 김민섭,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에 관한 법제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5., p.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하고 용이해졌고, 이에 국가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가. 빅 데이터와 개인정보

2016년 미국에서는 대형마트 마케팅팀은 한 고등학생에게 아기 옷, 아기 침대 등의 유아용품 할인쿠폰을 보내며, 부모보다도 딸의 임신사실을 우선 파악한 사건이 있었다. 이 할인마트에서는 고객의 구매 행태를 분석하여,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예측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예측이 가능했던 것은 빅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이었다.[8)]

이처럼 과거의 데이터라 함은 단순한 정보의 저장 및 수집을 의미하는 것에 그쳤으나, 오늘날은 컴퓨터를 비롯한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 등의 각종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양산하고, 그의 이동 및 복제가 용이한 시대가 되었다. 이에 각종 디지털·스마트 기기를 통하여 저장되고 수집된 데이터 중 가치 있는 정보를 도출하여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원하는 수요자에 판매하는 비즈니스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2012년 1.2 제타바이트 수준의 전 세계 데이터의 양이 2020년 100 제타바이트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바, 과거 데이터의 양과 비교한다면 오늘날의 데이터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하였고, 미래에는 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9)] 이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관리하고, 신속하게 분석함으로써 개인, 기업, 정부 등에 필요하며 중요한 정보를 창출하는 것을 우리는 '빅 데이터(Big Data)'라고 부르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문화 분야, 과학기술 분야 등 곳곳에서 그 중요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는 데이터의 축적만을 중요시하고, 정보의 양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였던 반면, 오늘날에는 축적·수집한 데이터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가치 있는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유리한 사회가 되었다. 이와 같은 연유로 많은 분야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과거 CJ제일제당의 한 푸딩 광고에서는 "피곤한 월요일 오후 2시 16분, 푸딩하자!"라는 광고를 한 바 있다. 이는 CJ 마케팅팀에서 네이버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 북 등의 SNS를 활용하여 피곤함과 관련된 단

---

8) 권오성, "부모도 모르는 딸의 임신, 대형마트는 알고 있다", <한겨레>, 2016.02.1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9868.html(최종방문일: 2017.05.03.).

9) 이러한 데이터에는 기존의 정형적인 데이터는 물론, XML, HTML 등과 같은 반정형 데이터 및 오디오·비디오 형식의 소셜미디어 데이터와 로그파일과 같은 비정형데이터도 포함된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16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2016.08.31., p.7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어 약 7만 건을 수집하여, 자체적인 시스템을 분석하여 사람들이 가장 피곤함을 느끼는 시간을 파악하여, 이를 광고에 활용한 것이다. 또한 각종 카드사에서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파악하여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 문화생활을 많이 즐기는 사람 등으로 유형화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빅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이다. 한편, 분당서울대병원에서도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개개인의 건강관리 및 진료에 관하여 의사가 진료를 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며, 의료기관에서의 개별 환자의 치료법에 대하여도 유사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활용하여, 해당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처 및 특정한 위험요소에 대한 예측, 적합한 처치 방법 및 치료계획의 생성 등 의료분야에서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도 해당 학생의 성적, 교육 환경 및 흥미, 성취도, 활용 교과서 등을 활용하여 개인에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교육 및 진로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공공데이터 및 인터넷 망 서비스를 융합하여,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탑승자를 예측하는 등의 빅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빅 데이터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발히 운용되고 있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빅 데이터 산업의 시장 또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1> 글로벌 빅 데이터 시장 예측(2013년~2018년)[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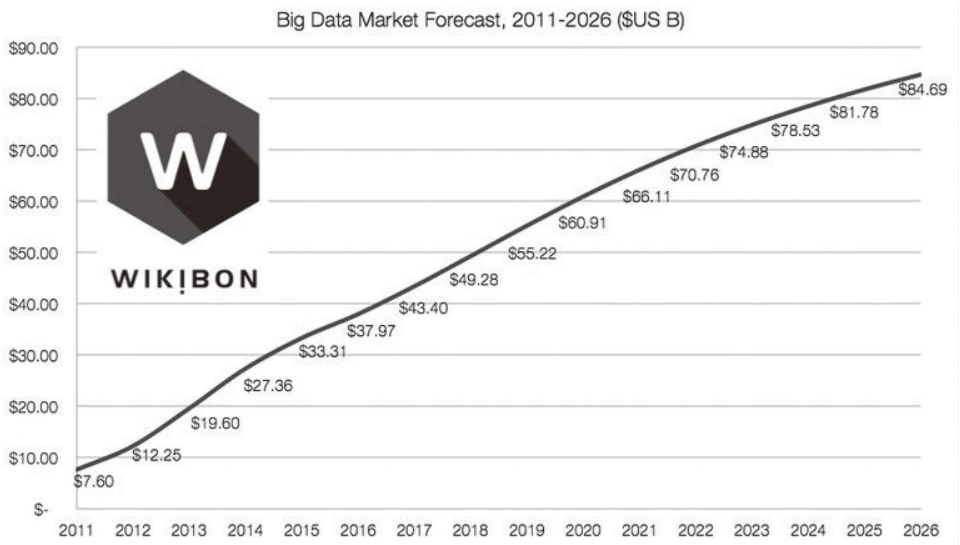

※ 출처: Big Data Market Forecast, 2011~2026(WIKIBON, 201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러한 빅 데이터는 우리 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며,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마케팅, 미래 수요 예측 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방면에서 원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많은 이득 및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빅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정보주체에게는 반사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실시간 감시 등을 통하여 미래의 개인에 관한 행동을 예측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환자의 건강상태 및 진료를 위하여 다른 유사 환자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해당 환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는 반면, 다른 환자의 상황, 미래 예측 등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그 다른 환자는 자신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정보가 유출되어 활용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불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빅 데이터는 정형적 데이터, 반정형적 데이터, 비정형적 데이터 등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분석함에 있어서도 민감정보로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활용이 불가능한 정보가 의도치 않게 포함될 수도 있으며, 이를 오인하여 분석하였다면 개인정보주체의 성향, 행동패턴 등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 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공개되거나 할 경우 해당 개인정보주체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다.

한편, 빅 데이터의 경우도 태생적 정보를 통하여 새로운 2차 정보를 창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만약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추출된 것이라면, 그 정보의 소유권 및 저작권의 귀속문제 또한 존재할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 등은 오늘날 인터넷 등의 온라인을 활용하여, 수기를 통하여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될 수 있는 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활용하게 될 경우 또한 개인정보의 간접적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빅 데이터는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해킹의 대상이 되기 용이하기에 개인정보주체는 해킹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료정보, 전과정보 등의 민감정보[11]의 유출이 가능한 바, 이는 개인정보주체에 있어서는 엄청난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빅 데이터의 부작용도 존재하는 바, 오늘날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접근권한을 달리 설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9), p.81.

11) 민감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규정되고 있는 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다. 여기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하거나, 암호화 조치 및 비식별화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12)]

나. 핀테크와 개인정보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ial)과 IT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써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모든 금융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모바일을 활용한 간편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 관리 및 클라우딩 펀딩 등이 있다.[13)]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삼성페이, 시럽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나우, 페이코 등의 결제시스템, 토스(TOSS) 등의 송금서비스 및 T-Money 어플을 활용한 교통카드 활용하는 것 또한 핀테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핀테크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으로 금융업계에서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정보기술 서비스를 다루는 비금융업계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표 1> 핀테크 산업 분류[14)]

구분		종류	특징
금융서비스	송금	모바일 및 이메일 송금	◆ 온라인으로 거래 가능한 가상화폐 ◆ 이메일과 모바일을 통해서 개인과 기업 간 송금
	결제	전자결제 서비스	◆ 상품 및 서비스 결제 편의성 향상 ◆ 가상계좌, 신용카드, 실물계좌로 결제 가능
	자산 관리	온라인 펀드, 인터넷 은행·보험·증권	◆ 온라인으로 다양한 펀드를 살 수 있는 슈퍼마켓의 역할 ◆ 인터넷은행, 온라인 전용으로 여수신 기능을 제공 ◆ 인터넷만을 통해 가입하는 보험·상품 ◆ 온라인 전용으로 주식, 채권, 선물 투자 플랫폼 제공
	투자	금융투자 플랫폼 (소셜트레이딩, 클라우드 펀딩)	◆ 대출, 창업자금 지원 등 투자 관련 금융을 서비스하는 온라인 플랫폼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투자 정보교류를 통한 가치판단 및 투자활동에 영향 ◆ 개인 간 자금조달을 중개해주는 서비스 제공
ICT	보안/	정보보완	◆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9), pp.81-82.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9), p.8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구분		종류	특징
기술	데이터 분석		더욱 고도화된 금융보안기술이 필요
		금융빅데이터분석, 금융 S/W	◆ 빅 데이터 분석으로 소비패턴의 인식을 통한 소비 활동 증진 ◆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정교한 대출금리 산정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가 정보보호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2015.02.

핀테크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간편 결제시스템과 같이 공인인증서가 불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과거 금융업계에서 서비스를 향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상 복잡함이 많았던 반면, 이러한 핀테크는 소액결제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X를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결제 및 간단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서 편리하다는 점이 대중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상황으로 인해 국내 은행들은 ICT 업계와의 연계를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핀테크 산업에 투자하며,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 등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이라는 지점이 불필요하며, 온라인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은행 접속 비밀번호를 틀리거나, 대출 및 이체 한도를 늘리기 위하여 은행방문을 통한 대면상담 및 개인정보의 분명, 정확한 확인 이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반하여,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운영은 개인정보주체에게는 개인정보를 도용당할 경우 등에 대비한 확인절차가 부재한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는 네트워크, 백업체계 및 차별화된 보완체계를 중시하며, 이를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등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개인정보의 보호, 2가지를 모두 충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15)]

국민들의 재산권은 우리 헌법 제23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보호되어야 하는 바, 핀테크의 경우는 금융과 IT기술이 결합된 서비스이기에 IT와 관련한 보안이 허술하여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생길 수 있다.

14) 이는 금융위원회 및 여신금융위원회에서 분류한 기준이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9), p.87.
15) 미국, 영국, 중국 또한 핀테크를 적극 활용하며, 관련 업계가 성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9), pp.88-9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14년 이베이(eBay Inc.)의 회원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당하여 고객 이름,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집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유출되었으나, 금융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 등은 별도로 보관되고 암호화 되어 있어, 해킹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16)]

그러나 이베이 계정과 연동된 페이팔의 계정이 함께 해킹되었던 바, 페이팔 계정에 개인정보주체의 금융정보를 등록한 피해자가 상당수 발생하였다. 특히 이베이 및 페이팔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나, 주로 해외 직구를 통하여 구매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이는 은행과 달리 대면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아 편리한 반면, 해당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주체의 것인지가 불문명하기에 이를 악용한 부정사용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정보 및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불법카드 복제 및 결제 또한 가능한 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핀테크라는 서비스 활용을 최소화하거나 핀테크 산업 성장을 저하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핀테크의 장점과 개인정보보호 상호 만족을 위하여 금융업계, IT업계 등에서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 스마트 의료/헬스 케어와 개인정보

오늘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집에 가스를 잠그기도 하고, 보일러 및 에어컨을 직접 조절하기도 하는 등의 가전·기기의 원격제어, 건물 등에 CCTV를 설치한 것을 확인할 수도 있는 서비스, 차량과 인터넷의 연결을 통한 긴급구난 자동전송 등의 사물과 인터넷을 연결하여 개인, 기업 및 산업에 전송되고, 환경에 따라 적절한 대처 및 대응이 가능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을 활용한 산업이 주요 현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사물인터넷은 스마트 의료 및 헬스 케어 분야에서 활발히 운용되고 있는 바, 이는 고령화된 사회 및 건강과 생명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회적 현실과 맞물려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스마트 의료 및 헬스 케어는 네트워크 또는 휴대용 진단센서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주체(환자)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원격진료를 하거나 건강

16) 길민권, “이베이, DB해킹으로 정보유출...비밀번호 변경 당부” <데일리시큐>, 2014.05.24.,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004(최종방문일: 2017.05.0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17] 특히 이러한 실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의 실시간 전달, 질병 및 치료의 신속한 대처 등이 이뤄질 수 있는 u-Healthcare 산업과 융합하여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는 개인정보주체의 원격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 상호 간의 원격 자문에 한정되며,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진료에 관하여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과 세계의사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에서 원격통신체계를 활용한 임상자료·기록·기타 데이터 및 문서 등을 토대로 질병에 대한 중재, 진단 및 치료·처방을 결정하는 의료행위로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벽지지역 및 산간지역 등의 의료행위가 발전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지역에서는 원격진료 및 행위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는 스마트 케어 및 헬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및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18] 우리나라에서도 원격진료의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없는 지역에 있는 노인, 환자, 어린이 등의 건강권 및 생명권의 보장을 위하여 스마트 케어 및 헬스 케어는 요긴한 수단 중 하나이나, 우리 「의료법」 제21조제2항을 비롯하여 동법 전반에서는 환자의 정보를 의료기관 내에서만 보관하며,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케어 및 헬스 케어 정보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비롯한 질병정보, 건강정보 및 처방정보 등이 전송되는 것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 등을 중간에 탈취하여 보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컨대, 2011년 4월부터 SKT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종이처방전을 발급하면 처방내역이 SKT 서버로 암호화되어 전송되고, 약국에서는 방문한 환자의 처방전번호만을 입력하면 처방내역이 다운로드 되어 의약품의 기록을 확인하고 제조할 수 있는 전자처

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9), p.91.
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9), pp.91-9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방전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19] 이러한 SKT의 서비스는 최소 1억 건이 넘는 의료정보의 무단 집적·보관·유용 등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 3월부터 해당 서비스의 무기한 중단이 이뤄졌다.[20] 이처럼 인터넷 등의 사이버 환경 등이 발전하면서 편리한 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반면, 의료정보 및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개인정보주체의 명예를 비롯하여 재산권 침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

라.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2016년 화제 중 하나이자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구글(Google)이 발명한 알파고(AlphaGo)와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이었을 것이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세돌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를 이길 수 있을 것을 예측하였으나, 5번의 공개 대국에서 4승 1패의 기록으로 알파고가 승리하며 현존하는 최고의 AI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인간의 지각, 추론, 학습 등의 지능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습득하게 하며, 축적된 정보인 빅 데이터를 통하여 특정분야에 있어서 최적화 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또한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바, 무인자동차 운행 또는 스마트 건물에너지 관리 등의 형태로 우리 생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은 '에코'라는 가정용 인공지능 기반 기기를 활용하여, 음성인식은 물론 음악 재생·검색, 인터넷 상에서의 구매 등의 기기를 선보인 바 있다.[21]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일정관리·가족 캘린더 공유, 대중교통정보 서비스의 제공, 날씨 정보 알림, 관심사 기반 맞춤 정보 제공, 검색 서비스 음악 감성 및 대화, 배달주문 서비스 등 SKT의 "누구", KT의 "인공지능 TV GIGA지니" 등[22]이 각광받고 있다.

---

19) 이혜경, "의협, SK 전자처방전 중단 환영…모듈삭제 요청 "추가발행 위험 없애야"", <데일리팜>, 2015.03.17., http://www.dailypharm.com/News/195474(최종방문일: 2017.05.03.).

20) 김예람, "SKT 최소 1억건 넘는 환자정보 - LGU+ 개인정보유출 잇따라", <국제뉴스>, 2015.03.31.,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906(최종방문일: 2017.05.03.); 윤건일, "SKT 환자 정보 수집 논란 '전자처방전' 사업 철수", <전자신문>, 2015.03.09., http://www.etnews.com/20150309000181(최종방문일: 2017.05.03.).

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9), p.84.

22) 현재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반면, 향후 '스마트 홈 허브'로 발전하기 위하여 건설사와의 협약을 통한 '음성인식 스마트 홈 아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구글은 전체 서비스 중 30%~50%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응용에 있어서 가장 큰 분야는 당연 '자율 주행 자동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율 주행 자동차는 각종 센서로 작동하며, 차간 거리 조정은 주차, 표지판 인식 등 정보를 파악하여 마치 인간이 운전하는 것과 같이 작동하고 있다. 또한 자율 주행 자동차는 부착된 센서를 통하여, 기존에 내장되어 있는 정보가 아닌, 도로에서 새로 얻게 되는 정보가 추가되는 이른바 '기계학습'을 통하여 운행정보를 습득하게 된다.[23] 또한 기자와 같이 기사를 작성하는 로봇 저널리즘 등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컴퓨터, 사물, 로봇 등은 오늘날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카드업계에서 카드 관련 범죄의 사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부정사용방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개발하고 있다.[24]

이러한 인공지능은 인간이 지식을 입력하면, 스스로 습득하고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빅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등의 부작용과 유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빅 데이터와 달리 인간처럼 지식이 입력되고,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기에 이론과 같은 이성적 측면에서는 적합할 수 있으나, 개인이 가지는 권리 및 사회적 규범에 관련된 분야에 있어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2015년 7월 미국에서는 구글의 이미지 인식프로그램에서 한 흑인 프로그래머의 얼굴을 고릴라로 인식한 사례가 있었다.[25] 이처럼 인공지능의 지식이 충분치 않다면, 오류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고 얼굴과 같이 개인정보를 분석함에 있어서 명예훼손 및 부적절한 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전자상거래 상에서의 구매 등과 같이 핀테크와 결합하게 될 경우에도,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수집될 수

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아마존 및 구글에서도 AI를 집에 응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3) 네이버지식백과-자율주행자동차, 2015.06.0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9584&cid=59088&categoryId=59096(최종방문일: 2017.05.03.).

24) 문승관, "KB국민카드, 인공지능 적용 부정사용방지시스템 개발", <이데일리>, 2017.03.07.,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3047126615861024&DCD=A00102&OutLnkChk=Y(최종방문일: 2017.05.03.).

25) Alistair Barr, "Google Mistakenly Tags Black People as 'Gorillas,' Showing Limits of Algorithms", <The wall street Journal>, 2015.07.01., http://blogs.wsj.com/digits/2015/07/01/google-mistakenly-tags-black-people-as-gorillas-showing-limits-of-algorithms/(최종방문일: 2017.05.0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있어 위험성이 존재한다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에, 아직 이와 관련한 규제가 부족하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적절하고 유용한 활용은 물론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제2절 개인정보의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개인정보자기결정권(프라이버시권)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당시에는 예컨대 개인이 어떠한 잘못 또는 나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망각 속에서 잊혀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구글링 등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개인정보주체의 과거사가 검색만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해당 자료 및 파일 등의 복사, 유출로 인하여 개인정보주체 스스로 이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도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존재하는 바, 잔존 데이터로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남아있다.[26)]

이러한 연유로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본인의 권리로 인정하고자 하였고, 정보통신시대에서의 자신의 과거사 등을 지우고 싶은 권리를 창설하게 되었다. 이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오늘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로 인정하기 위한 적극적 움직임이 있다.[27)]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등장

과거에는 개인이 타인의 간섭과 공적인 영역으로부터의 고유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을 자유를 확보하는 프라이버시권만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은 1888년 미국의 Thomas Cooley 판사가 처음으로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이라고 판시한 이후, Samuel D. Warren(이하 "워렌"이라 한다)과 Louis D. Brandeis(이하 "브랜다이스"라 한다)의 '하버드 로 리뷰(Harvard Law Review)'를

26) 서윤희·장영현, "잊혀질 권리의 도입과 적용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제2권 제3호,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6.08., p.25.

27) 특히 2009년 독일에서는 범죄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량을 모두 채운 뒤, 관련 범죄 기록을 인터넷에서 지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이미 죗값을 치른 이후에도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법원에서도 범죄자들에게도 잊혀질 권리가 필요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서윤희·장영현, 위의 논문(각주26), p.2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통하여 구체화된 개념으로, 언론의 횡포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등장하였다.[28]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정보통신사회로 변화할 당시, 사람들은 단순히 간섭 또는 방해받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를 벗어나 정보 주체 본인 스스로 사생활을 통제할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를 주장하며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이 확대되었다. 또한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정보가 컴퓨터에 수집·저장되어 자동으로 분류 및 분석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하여 배타적 통제권을 주장하여, 자신이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리인 '정보프라이버시', 즉 오늘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등장하게 되었다.[29]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처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정보의 수집·이용·제공·관리·폐기 등의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하는 권리를 오늘날 개인정보자기결정권[30][31]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1983년 「인구조사법」에 대한 결정[32]에 의해 처음

28) 워렌은 보스턴에서 소위 잘나가는 변호사였고, 자신의 아내 또한 상원의원의 딸로써 지역주민의 관심의 대상이었기에 그들의 사생활 보도에 대하여 불쾌하였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워렌 부부의 딸의 결혼 소식에 지역 언론이 흥미위주로 보도하자 참다못한 워렌은 친구인 브랜다이스와 함께 새로운 법 이론을 정립하여 사생활 침해를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로 하며,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를 프라이버시권으로 체계화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http://cafe.naver.com/nemo05/1455(최종방문일: 2017.04.10.).

29) 오늘날에는 프라이버시권을 ①집, 사무실 등의 사적 영역(공간)에 대한 CCTV 감시, 수색 등이 침해와 관련이 있는 공간프라이버시. ②개인의 신체 또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개인프라이버시, ③정보프라이버시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http://nologout.blog.me/192173200(최종방문일: 2017.04.10.).

30)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는 ①자신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침해되지 않을 권리(자기정보자율결정권 또는 자기정보 수집·분석·처리배제청구권), ②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유로이 열람할 권리(자기정보접근권 또는 자기정보열람청구권), ③자신에 관한 정보의 정정·사용중지·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이러한 요구의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 불복신청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세부사항이 존재한다. 이에 관하여 생활법률상담-개인정보자기결정권,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Counsel-View?Serial=827(최종방문일: 2017.04.10.).

31) 위키백과-개인정보자기결정권, 2017.03.29., https://ko.wikipedia.org/wiki/%EA%B0%9C%EC%9D%B8%EC%A0%95%EB%B3%B4%EC%9E%90%EA%B8%B0%EA%B2%B0%EC%A0%95%EA%B6%8C, (최종방문일: 2017.04.10.); 이한주, "의료 제 문제의 공법적 해석", 「법학연구」 제23권제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p.81; 성낙인, 「헌법학」 제14판, 법문사, 2014., p.1207;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13판, 박영사, 2017., pp.416-418; 이인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와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1., p.23; 헌재 2009. 10. 29. 2008헌마257.

32) 인구조사법은 인구조사 시 개인의 습관, 출·퇴근의 교통수단, 부업 내역, 학력 등 매우 상세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요청하고 있어 연방헌법재판소는 "언제 어떠한 한계 내에서 개인의 생활이 공개되는지를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의 사고에서 나오는 개인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등장한 개념으로써,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3]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인권헌장」에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1977년 독일에서는 「연방정보보호법」을, 1978년 프랑스에서는 「정보처리·축적·자유에 관한 법률」을, 1984년 영국에서는 「정보보호법」을, 1988년 일본에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나.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제16조(주거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8조(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 프라이버시권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된 세부 내용에 있어 공간프라이버시, 개인적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가 있음에 반해, 정보프라이버시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바, 프라이버시권의 일반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헌법 제17조 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의 내용을 살펴본 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의 내용

이러한 헌법 제17조에 따르면 ①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②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③오늘날 인정되는 자기정보통제권으로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란 개인 스스로 본인의

권한"이라고 함으로써 개인의 구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개인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박지용, "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0권제2호, 한국의료법학회, 2012., p.168; 박경신, ""구글 스페인"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평석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유래를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20권제3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4., p.39; 독일연방헌법재판소, 15.12.1983 - 1BvR 209/83; 1BvR 269/83; 1BvR 362/83; 1BvR 420/83; 1BvR 440/83; 1BvR 484/83BVerfGE 65, page 1 ff.

33) 김승한, "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의 한계와 개선방향",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4권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 센터, 2013.02., p.11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사적 영역에 관한 사항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당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34] 이는 구체적으로 사적인 일의 공개, 오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공개, 성명·초상·경력 등 인격권의 영리적 이용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35] 예컨대, 본인의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본인이 명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면 이는 사생활을 본인이 공개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나, 해킹 등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사생활이 공개되었다면 이는 우리 헌법 제17조 상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36]

한편, 사생활의 침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구별된다. 사생활의 침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소극적 권리로써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공개를 지양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 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본인 적극적 의사로써 자기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스스로 본인 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본인의 개인정보의 사용범위를 결정하거나 침해를 당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일련의 권리를 의미한다. 즉,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소극적이 자유권임에 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적극적 청구권의 성격이 보다 강조된다 할 수 있다.[37]

반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명예권은 인격권의 보호라는 측면과 침해 및 훼손에 있어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되나, 상호 구별되기도 한다.[38] 사생활은 사회적인 평가와 무관하게 본인의사로 밝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임에 반해, 명예권은 사회적 평가에 따라 개인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에 명예권의 침해는 사생활의 침해에 해당하나, 사생활의 침해는 반드시 명예권의 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생활은 그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

34) 양건, 「헌법강의」 제6판, 법문사, 2016., p.514.
35) 성낙인, 앞의 책(각주31), pp.1204-1205; 정종섭,「헌법학원론」 제11판, 박영사, 2016., p.653.
3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넓은 의미의 인격적 이익을 전부 포함하는 바, 미국 판례에서는 ①결사 내에서의 프라이버시, ②정치적 신념에 속하는 프라이버시, ③익명으로 삐라 등을 배포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④신체의 불가침에 대한 프라이버시, ⑤결혼생활에서 부부의 프라이버시, ⑥음란문서의 사적 소유의 프라이버시, ⑦부당한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 ⑧행정조사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권리, ⑨도청당하지 않을 권리, ⑩싫은 정보를 받지 아니할 권리, ⑪자기에 관한 기록장부 등의 공개요구와 정정요구권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결혼·임신·출산·자녀의 양육·교육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성낙인, 앞의 책(각주31), p.1203.
37) 양건, 앞의 책(각주34), pp.514-515.
38) 성낙인, 앞의 책(각주31), p.120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를 불문하고 침해행위로 성립될 수 있음에 반해, 명예훼손은 그 사실이 진실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경되는 등의 행태로 나타나는바[39] 양자 간의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둘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란 침해가 없었으면 사생활에 대한 평온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었는데, 이를 침해한 것으로써 감시·도청 등의 방법으로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인의 사생활에 형성, 억제 및 위협 등의 간섭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또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 해당한다.

셋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기정보 통제(관리)권"이라고도 함)은 오늘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 해당하나, 개인의 인격 및 명예가 중시되며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서의 사생활이란 본인의 사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공적영역과는 상이하다는 것에는 의문이 없으나, 어떤 것이 사적 영역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시대적·장소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연예인, 정치인 등 소위 '공인'일 경우 그들의 사생활이 공적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바, 이를 완전한 사적영역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40] 또한 사생활 침해 여부를 논할 때에도 기준이 개인정보주체인지 일반사람들의 통상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하여 개인정보주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일관된 판례가 성립할 수 없고, 이를 심사함에 있어서 막대한 시간 및 비용이 소모되는 바,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제1설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일반적 인격권에 해당한다는 학설로써 "우리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자유권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소극적인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자유권으로 본다고 해서 자신의

39) 양건, 앞의 책(각주34), p.514.
40) 허영, 앞의 책(각주31), pp.414-41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보를 컨트롤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를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조항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1]라고 주장한다.

제2설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넓게 해석하며 사생활자유의 내용 중의 하나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이해한다. 따라서 본 학설은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일환으로서 보장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내용이 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법적 안정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러므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 인격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생활이 비밀과 자유과 공권력 또는 제3자에 대한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라면 자기정보관리통제권(적극적 프라이버시권)은 청구권적 성격이 강한 능동적·적극적 권리이다. 또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 일신 전속적 권리이다. 그리고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중에서 자기정보열람청구권(접근권)은 알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권과 중복되는 측면이 없지 아니하다[42]"라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해석하고 있다.

제3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찾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에서 내용을 찾는 것으로써 모든 국민은 사생활에 대하여 침해를 받지 않으나, 개인정보의 존재영역에 대한 형성권 및 개인정보를 스스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된다.[43]

제4설은 헌법 제37조제1항에서의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본다.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1983년 「인구조사법」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처음 인정되고 지지되어 온 개념이기에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 및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2005년 「주민등록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하여 헌법 제27조 및 제10조제1문에 근거한 일반적 인격권과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41) 이상명, "의료정보화와 의료정보보호", 「법학논총」제 25권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p.240;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9전정신판, 박영사, 2007., p.725.
42)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법문사, 2010., p.452.
43) 강경근, 앞의 책(각주3), pp.397-400; 이인호,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중앙법학」창간호, 1999., pp.68-6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 및 민주주의원리 등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으나, 궁극적으로 개인정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와 같은 기본권 및 기본원리를 완전히 포섭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 본 바 있다.[44]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례의 입장

우리 헌법재판소는 제3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후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기록, 학생생활기록 등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사건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45]”라고 판시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의견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적 근거에 관하여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헌법상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와 헌법 제10조·제17조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대법원의 경우 국군보안사령부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써 군사보안이나 군방첩에 관련하여 민간인의 신상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첩보의 수집 및 수사를 할 수 있으나,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인, 법조인, 교수, 종교인 등을 그 대상으로 하여 개인에 대한 사적정보를 무제한적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하고, 이러한 수집된 정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유출·공개 등을 원인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법 제10조는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

44)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45)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등.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하고 있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46]”고 판시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견해를 보이며 그에 대한 근거를 헌법 제10조와 제17조로부터 도출하고 있다.[47]

2. 법률적 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바, 동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과거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거나 특정 사회에서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만이 존재하였으나, 국민의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파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서는 과거의 의미의 개인정보는 물론 무국적자의 발생을 방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 보호를 목적이 가미되어 광의의 개인정보의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48]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로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은 첫째, ‘살아있는’

---

46) 대판 1998. 7. 24. 96다42789 판결.

47) 한편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인간존엄성존중의 구체적 내용이 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법적 안정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나아가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사생활 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평온한 유지 및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사생활 평온 및 형성의 자유),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정보관리통제권)를 그 내용으로 한다(서울고법 1996.8.20. 95나4414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그리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서울고법 1995.8.24. 94구39262)”라는 서울고등법원의 입장도 존재한다.

48) 임규철,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북포유, 2013., p.2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 따라서 원칙 상 사망자 또는 실종선고 등으로 인하여 사망으로 간주된 자의 개인정보는 법률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바, 보호받을 수 없다. 둘째,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 개인이라 함은 자연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법인이나 단체 등은 법률상 개인정보로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만을 개인정보로 인정한다. 이는 식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컨대, 주민등록번호, 기업의 사번 및 학교에서의 학번, 지문, 혈액 등이 있다. 또한 식별가능성이 있는 정보 중 식별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불확정 개념으로써 주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야 알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예컨대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는 문서, 사진, 녹음된 음성정보, CCTV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 등을 불문한다.[49]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 짓는 사항으로써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50][51]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개인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

49) 구자룡, 「알기 쉬운 핵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제1판, 신아사, 2012., p.19; 임규철, 앞의 책(각주48), p.38.
50)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51) 개인정보 중 개인에 관한 식별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의 범위에는 특정 개인의 다양한 측면들을 나타내는 ①신체 및 정신의 속성(외관, 건강, 의견, 취향 등), ②행동양식 및 관계(직업, 경제적 상황, 사회 또는 사적 관계 등), ③정체성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등의 개인등록번호, 홍채 등의 생물학적 정보 등), ④비인격성이 존재하지만 특정 개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IP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거주지 등이 있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의 특정을 짓는 사항'으로 개인정보를 한정지은 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임규철, 앞의 책(각주48), p.2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와 매우 흡사하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사하게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를 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①생존하는, ②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③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라고 요건을 분류하고 있는 바,[53] 매우 폭 넓은 해석을 추구하고 있다. 예컨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 내역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54]라며 1차적 정보는 물론 2차적으로 생성되는 정보가 개인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개인정보로 인정하고 있다.[55]

<표 2> 개인정보의 유형 및 구체적 예시[52]

유형	개인정보의 예
인적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이메일 주소,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등
신체적 정보	◆ 신체정보: 얼굴, 지문, 홍채, 음성, 유전자 정보, 키 몸무게 등 ◆ 의료·건강정보: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병력(病歷) 등
정신적 정보	◆ 기호·성향 정보: 도서·비디오 등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물품구매내역, 웹 사이트 검색내역 등 ◆ 내면의 비밀 등: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당·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등
재산적 정보	◆ 개인금융정보: 소득,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동산·부동산 보유내역, 저축내역 등 ◆ 신용정보: 신용평가정보, 대출 또는 담보 설정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사회적 정보	◆ 교육정보: 학력, 성적, 출석상황, 자격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등 ◆ 법적정보: 전과·범죄 기록, 재판 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등 ◆ 근로정보: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등 ◆ 병역정보: 병역여부, 군번, 계급, 근무부대 등
기타	◆ 전화·통화내역, 웹사이트 접속내역, 이메일 또는 전화메시지, 기타 GPS 등에 의한 위치정보 등

52)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보고서(각주53), p.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차이가 존재하는 바,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의 운영에 있어서의 주무부처는 행정자치부임에 반해, 「정보통신망법」은 주무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이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개인정보처리자 일체에 적용되나, 「정보통신망법」은 방송·통신 분야를 규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에만 적용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시행되기 전 공공, 정보통신, 금융 등 각각의 분야별로 규정되고 있었기에 오늘날 일반법과 개별법이 공존하며, 주무부처 및 법령의 목적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계에 있어서「정보통신망법」이 정보통신 및 방송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으로써 역할하고 있다.

다. 기타 개인정보 관련 특별법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 개인정보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 폰 등의 위치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마트 기기 등은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수집되는 바, 생활을 하면서 길을 쉽게 찾을 수도 있고, 해외 배송 등의 원거리의 상품을 구매하고 배송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이동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물류 등의 상거래에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개인정보주체의 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가 유출되고 오·남용되는 등의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치정보기반서비스의 이용은 활발히 운용하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여

53)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2012.09., p.5.
54)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위의 보고서(각주53), p.6.
55)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에 관한 포괄적 해석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와 전통적인 사생활권(특히 통신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대상을 일정부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통신비밀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보호 법익과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김민섭, 앞의 논문(각주7), pp.107-10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위치정보법」 상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56] 개인위치정보에서 의미하는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57]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의미한다.[58]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성이 없는 부동산 또는 자연 상태의 지형·지물 등의 지리정보는 제외되며, "특정한 시간"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상당시간 동안 고정된 주소 또는 거주사실 등은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개인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라고 규정되고 있어 원칙적으로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법인 등의 단체 또는 개인집합체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일하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다면, 이 또한 개인위치정보이기에 동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예컨대, 위치좌표의 값만으로는 개인위치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휴대폰 번호 또는 개인정보주체의 성명 등의 개인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동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치정보 상의 "이동성이 있는 물건"과 개인위치정보로의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의 관계에 있어서는 해당 위치정보가 물건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인지 또는 개인정보주체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따라 일반 위치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고,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물건을 배송함에 있어서 위치추적장치를 활용하였을 경우, 구매자는 스마트폰 등의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 물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건이 배송자의 위치를

---

5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40호)」 제2조제2호.

57)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411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이하 생략).

5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각주59) 제2조제1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파악하여 본인이 구매한 물건이 언제쯤 도착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전자는 물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나, 후자는 배송자, 즉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다.

「위치정보법」 또한 「정보통신망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위치만을 특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바, 주무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이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으로써의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59]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개인정보

전술하였듯 오늘날 핀테크 등의 금융서비스가 IT업계와 결합하면서 개인정보주체의 신용정보는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될 만큼 중요해졌다. 이러한 금융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용도 등 금전거래에 있어서의 신빙성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용정보의 보호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는 법률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60] 「신용정보법」 상 개인정보주체의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라 함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며,[61] 여기서의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①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②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③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④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⑤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의미하며,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62]

동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듯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신용도 및 신

59) 한편,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와 달리 ①개인정보주체가 아닌 사업자(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등)에 의해여 생성되는 정보이며, ②이동 등의 원인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김민섭, 앞의 논문(각주7), p.110.
6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22호)」 제1조.
6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각주60) 제2조제2호.
6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각주60) 제2조제1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용거래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하기에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되며, 이미 공개되거나 공시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개인신용거래정보는 상거래 관련성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63] 개인신용정보에 있어서 특징적인 점은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철저히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성명, 연락처, 주소, 성별, 국적 등의 개인정보는 신용정보와 결합하였을 때만 동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신용정보와 결합하지 않는 정보와 같은 단순한 개인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적용받는다는 것이다.[64] 행정자치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명확히 구분하는 태도를 보이며, 학계에서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논할 때에도 「신용정보법」 상의 개인신용정보에 관하여는 논외로 하고 있다.[65]

<그림 2>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구분[66]

개인신용정보에 있어서는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나, 신용도 및 신용거래정보 등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등에서 개인신용정보에 관하여 규정할 경우는 일반법으로써 지위를 가진다.

63) 정순섭·양기진,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법제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정보연구」 제1권제1호, 한국금융정보학회, 2012.02., p.25.
64) 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Guideline」, 2013.07., p.10.
65) 김민섭, 앞의 논문(각주7), p.113.
66) 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의 보고서(각주64), p.1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절 개인정보의 가치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개인정보주체인 자연인에 있어서는 작게는 무분별한 광고 전화·문의, 선거운동정보의 수신 등에서부터 크게는 금전적, 육체적·정신적 손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67]

1.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

2016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한가?'에 관하여 응답자 중 88.5%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2014년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89.8%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하락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3.7%에서 2.6%로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면 표본에 있어서의 차이일 뿐,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아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림 3>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6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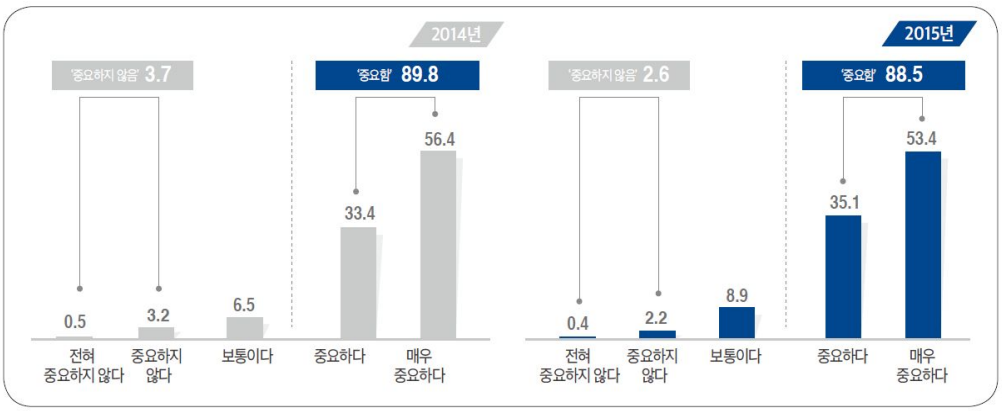

※ 출처: 2015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2015.)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정보통신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점적으로

67)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 또는 사업자가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들 또한 개인정보의 주체이기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인지하는 개인정보의 중요성 인지여부는 개인정보주체와 다를 바 없을 것이기에,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가치를 인식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관하여는 "제3절 개인정보의 가치"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6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9), p.2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998년부터 매년 ①정보보호의 중요성 및 정보보호 위협사안에 대한 인지 및 심각성, ②정보보호를 위한 정보수집 및 학습활동, ③정보보호 관련 제품·서비스의 이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활동, ④침해사고 현황 및 대응조치, ⑤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및 개인정보 유출 예방·대응, ⑥신규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 우려 및 침해 예방 활동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바,[69] 개인정보주체를 상대로 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62.5%의 인터넷 이용자가 개인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을 기준으로 남성은 96.7%, 여성은 97.5%로 개인정보에 관한 인식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으며, 연령을 기준으로는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는 20대와 30대가 각각 98.0%, 97.7%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보다 강하게 인지하고 있다.[70]

2. 개인정보 수집의 적정성 인식

이러한 개인정보의 중요성의 인지에 따라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개정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있어서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72.4%의 응답자가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표 3> 개인정보 수집의 적정성[71]

(단위: %)

구분		과도하게 수집한다	필요한 내용만 수집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72.4	19.8	7.8
성별	남성	73.4	19.2	7.5
	여성	71.5	10.4	8.1
연령	10대	60.6	27.1	12.3
	20대	73.0	18.9	8.1
	30대	69.2	23.8	7.0

69)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써의 정보보호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정보 등)가 유출 되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인 개인정보보호를 통합하여 조사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중점적으로 기술한다.

70)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6년 정보보호실태조사 개인부문」, 2017.02.26., p.1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구분		과도하게 수집한다	필요한 내용만 수집한다	잘 모르겠다
	40대	80.0	12.9	7.1
	50대	76.6	17.2	6.2
	60대 이상	72.1	21.0	6.9

※ 출처: 2015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2015.)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법률에 규정된 경우 외에 수집할 수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2014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①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이와 유사하게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는 바[72],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자제하는 것에 대하여 체감하고 있느냐는 설문에 응답자는 2014년 50.9% 줄어들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2015년 59.6%로 9.0%p 주민등록수집의 변화가 생겼다고 답변하였다.[73]

3.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관한 인식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의 경우에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한 답변이 약 90%에 달하고 있는 것에 반해, 개인정보주체인 응답자들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를 제공받고자 요청하는 동의서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의 내용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주체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어떤 정보가 수집되었는지, 열람하고 수정하며, 이를 삭제하기를 요청하는 등의 권리가 존재함에도 이를 행사하는 응답자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동의서는 응답자의 56.9%가 '대체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7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9), p.25.
72)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4107호)」 제24조의2.
7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9), p.2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5.9%는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72.8%가 동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특히 동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51.4%)',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워서(33.3%)', '개인정보처리자를 신뢰하기 때문에(7.3%)',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이 없어서(4.4)',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알지 못해서(3.6%)'로 응답하고 있다.[74]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①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②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③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④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⑤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⑥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⑦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⑧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⑨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⑩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75]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설문에 응답한 49.1%는 이를 인지하고 있다며 전년도에 비하여 3.9%p 증가하였으나, 이를 직접 확인하는 응답자는 37.5% 밖에 되지 않아, 개인정보주체 스스로도 관심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76]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해당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31.2%)', '알고 있으나 신청하는 절차가 번거로워서(28.9%)', '알고 있으나 요청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26.8%)'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행사한 응답자가 22.4%에 그쳤다.[77]

---

7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9), p.26.
75) 「개인정보보호법」(각주72) 제30조조1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22호)」 제31조제1항.
7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9), pp.26-27.
7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9), pp.27-2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장 개인정보의 침해 및 현행 구제법제

제1절 개인정보 침해 및 대응

1. 개인정보주체의 침해 및 대응 유형

가. 개인정보 유출 사례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이후에도 꾸준히 발생하였다. 대표적으로 2011년 7월에 발생한 NATE 해킹사고를 들 수 있다.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인 네이트온과 싸이월드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해킹되면서 약 3,500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등이 전부 유출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인구가 약 3,700만 명이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사실상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의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 중에서는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78] 또한 2014년 1월에는 국민은행, 농협, 롯데카드 등의 금융사에서 컨설팅을 통해 확보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불법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약 1억30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도 존재하여, 집단손해배상 및 회원탈퇴 등의 혼란이 초래되기도 하였다.[79]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는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만을 개인정보 침해라 하지 않고, ①개인정보의 무단수집, ②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③목적 외 이용, ④제3자에 제공, ⑤개인정보 미파기, ⑥주민등록번호 도용, ⑦개인정보유출로 구분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경험을 설문조사한 바 있다. 평균 29.6%가 개인정보의 침해를 경험하였다고 답변하였다.[80]

이러한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 종합

---

78) 심우민,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논점」 제28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1., p.1.

79) 김지수, "카드사 정보유출 국민검사 청구…집단소송도 제기", <연합뉴스 TV>, 2014.01.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2&aid=0000045623(최종방문일: 2017.05.05.).

80) 2015년 기준으로 ①개인정보무단수집이 43.4%, ②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28.3%,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이 20.3%, ③제3자에의 제공이 35.6%, ④개인정보 미파기가 22.4%, ⑤주민등록번호도용이 17.5%, ⑥개인정보 유출이 39.5%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9), p.2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포털'을 통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하여 당사자의 조사 및 법규위반 여부, 위반사항 정도 등을 조사하게 되는 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상 접수된 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 개인정보 침해 신고 유형(연도별)[81]

(단위: 건)

접 수 유 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267	1,623	3,507	2,634	3,923	2,442	2,568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또는 명시 의무 불이행	75	53	396	84	268	65	54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146	379	847	1,139	1,200	868	390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1,202	1,499	2,196	1,988	2,242	3,585	3,141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 등	158	278	941	1,022	1,036	857	622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불이행	25	36	125	44	40	22	25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22	64	44	47	54	41	41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21	38	48	51	39	48	123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관련	1,551	10,958	3,855	4,518	7,404	4,006	2,731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323	488	779	602	686	767	545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 요구 불응	826	662	717	674	792	957	855
동의철회, 열람·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 미이행	630	800	660	510	352	381	286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35	71	47	36	33	34	33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10,137	67,094	139,724	129,103	83,126	77,598	48,557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외 관련(신용정보 관련 문의 등)	38,414	38,172	12,915	35,284	57,705	60,480	28,239
합 계	54,832	122,215	166,801	177,736	158,900	152,151	98,210

※ 주1: "주민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에는 주민번호 클린센터 민원이 포함되어 있음
※ 주2: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외 관련"에는 개인정보관련 KISA 사업문의 민원이 포함되어 있음(2013년 4월~)

81)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개인정보 보호 상담사례집」, 2017.01., p.2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개인정보 침해 대응

(1) 사전적 보안

개인정보 침해는 주로 인터넷, 스마트 기기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사전적 보안의 방법으로 개인정보주체는 PC 및 네트워크 보안 및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상 보안을 시도하고 있다.

첫째, 'PC 및 네트워크 보안'의 방법으로 전술하였듯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인터넷 이용자들은 정보보호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제품을 통하여 이러한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 중 약 86%가 PC 및 네트워크의 보안을 위하여 정보보호제품을 활용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20대(94.4%)와 10대(92.1%)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 주로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73.8%), 기존에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43.9%) 또는 ISP 제공 보안 프로그램(21.1%)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82]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및 정보를 위하여 ①악성코드 검사 실시, ②백신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③PC 및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예방, ④비밀번호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다. 주로 1개월에 1회 정도의 악성코드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30.8%), 백신프로그램의 경우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설정(79.9%)하며 컴퓨터 등을 활용하고 있다. PC 및 네트워크의 보안을 위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많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은 '잘 모르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거나 접속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61.0%로 가장 높았으며, '의심스러운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열지 않는다'와 '잘 모르는 웹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음'이 각각 59.4%, 51.0%로 높았다. 또한 PC보안을 위하여 운영체제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있다는 의견이 42.7%였으며, 중요 데이터 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경우도 31.0%였다. 또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를 위하여 남들이 쉽게 알지 못하는 문자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있으며, 6개월에 1회 정도 변경하는 경우를 가장 많이 존재하였다.[83] 이러한 비밀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응답자들은 '비밀번호를 남들이 알아내기 어려운 문자열로 설정'하는 경우가 55.2%로 가장 높았으며, '비밀번호를 생년월일 등 추측하기 쉬운 것으로 설정하지 않음', '웹사이트

82)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보고서(각주70), pp.22-23.
83)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보고서(각주70), pp.24-3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등에서 비밀번호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함'이 각각 43.4%, 20.6%로 높게 나타났다.[84]

반면 컴퓨터 등의 기기에서 정보보호 제품을 이용·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이용방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41.3%에 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의 중요성의 인지하고 있으나 '필요가 없어서' 정보보호제품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40.2%에 달하였다. 특히 10대와 50대는 이용방법을 몰라서 활용을 잘 하지 못하고 있으며, 20대~40대는 필요가 없어서 정보보호제품의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85]

<표 5> 정보보호 제품 비이용 원인(성별, 연령별)[86]

(단위: %)

구분		이용방법을 몰라서	필요가 없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PC에 불필요한 프로그램/서비스를 설치하기 싫어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전체		41.3	40.2	25.1	18.4	10.2
성별	남성	34.9	44.0	30.7	18.2	11.1
	여성	46.7	37.0	20.2	18.7	9.3
연령별	12-19세	33.6	29.8	28.0	30.2	5.5
	20대	19.5	44.2	43.1	23.8	23.5
	30대	25.3	49.7	33.1	30.4	16.2
	40대	35.4	45.2	20.2	16.9	7.4
	50대	53.8	35.9	22.1	13.2	8.6

※ 주1: 복수응답

둘째, 오늘날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의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바, 개인정보주체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상의 보안' 또한 시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만 6세 이상의 국민 중 85%가 보유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30%에 달하는 국민이 스마트폰을 이용하

84)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보고서(각주70), p.30.
85)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보고서(각주70), pp.25-26.
86)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보고서(각주70), p.2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 있다.[87] 스마트 기기의 보안을 위해서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권한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조치,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 방문 자제 등의 조치를 실천하고 있다.

<그림 4> 스마트 기기 보안 예방조치[8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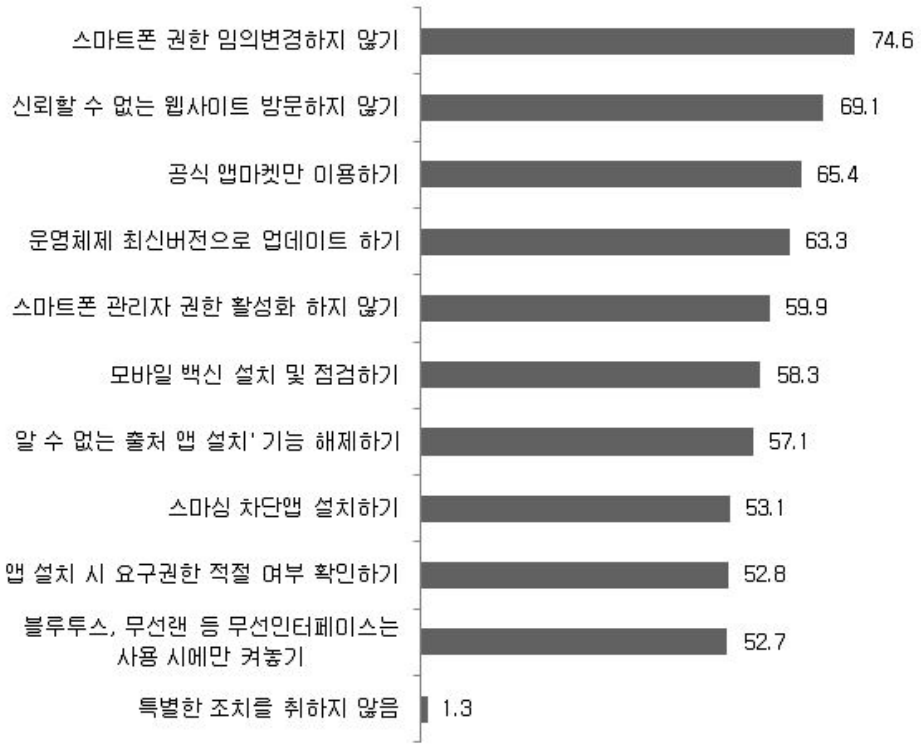

※ 주: 복수응답

특히 오늘날 통신사 및 매장 등에서 프리 와이-파이(Free Wi-Fi) 등을 자유롭게 제공하고 있음에 반하여,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 이용자들은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으로 민감한 서비스 이용하지 않기', '제공자가 불명확한 무선랜 이용하지 않기', '본인 스마트폰 3G/4G를 통한 무선랜 사용 시 패스워드 설정' 등의 방법이 각각 67.4%, 65.0%, 56.9%에 달하는 바 무선랜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89] 또한 오늘날 Facebook,

87) 윤석제, "국내 인터넷이용자 수 4364만명…스마트폰 보급률 85%", <노컷뉴스>, 2017.01.30., http://www.nocutnews.co.kr/news/4724856(최종방문일: 2017.04.09.)
88)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보고서(각주70), p.32.
89)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보고서(각주70), p.3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카카오톡,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바, 이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SNS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인신상정보, 사진, 영상 등의 정보는 신중히 선택하여 공개하기(82.3%)', '가족, 친구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시, 공개하지 않기(79.1%)',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친구로 추가하가(78.1%)',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동의하가(72.6%)', '업로드 개인정보, 게시글은 빠르게 확산되어 삭제가 쉽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게시하기(67.7%)', '정보 공개설정 범위를 직접 확인하고 재설정하기(61.5%)', 'SNS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로그아웃하기(58.1%)', 'SNS 이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관계기관에 도움 요청하기(43.5%)' 등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으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이 0.5%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90] SNS의 적극적 활용과 보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후적 대응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침해 발생 사후의 대응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음'이 응답자의 67.4%로 나타나며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사후 대응을 하는 경우도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경미한 조치로만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5> 개인정보 침해 사후적 대응 경험[9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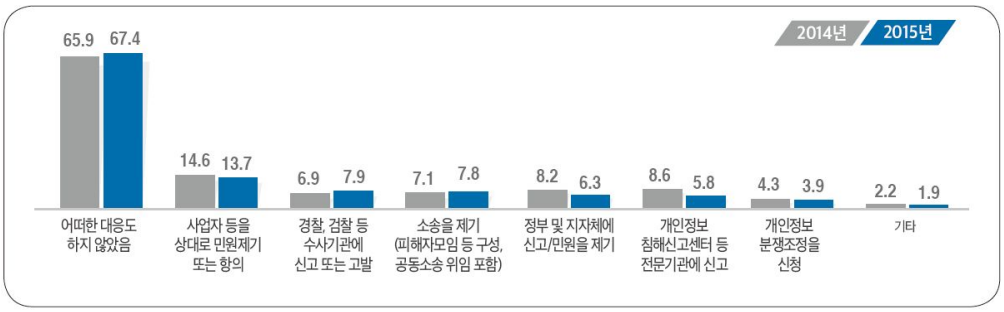

※ 출처: 2015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2015.)

90)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보고서(각주70), p.3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개인정보 침해에 사후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피해구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가 48.4%로 가장 높았으며, '피해구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해구제 방법/절차를 몰랐기 때문에'[92]가 각각 46.9%, 36.1%로 뒤를 이었다. 또한 '구제를 받더라도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와 '피해규모가 작아서 구제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라는 인식 또한 각각 34.0%, 28.1%로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93]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개인정보의 침해에 있어서 배상 및 구제 확률이 낮고, 완전한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참작하여 응답자들이 응답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경험자 중 57.8%가 사후 대응을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경험했다고 답변한 응답자 중 38.7%는 '해당 서비스를 탈퇴하고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업 이용'을 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직접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이용'하는 경우도 각각 16.5%, 13.9%였다.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경험했음에도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자가 42.2%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9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의 개인정보 사후적 대응과 마찬가지로 이를 구제받고, 손해배상을 진행함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침해 및 대응 사례

가. 개인정보유출 사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어서 고객(개인정보주체)의 정보 유출 및 침해는 고객에 대한 신뢰상실 및 고객 이탈, 잠재고객의 외면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 저하 또는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인한 비용수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개인

9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9), p.29.
92) 개인정보주체 중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경험이 있는 자는 응답자 중 16.2%로 매우 낮았기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간단체 등', '지역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강 의향에 대하여는 각각 50.5%, 29.8%, 25.2%로 응답하였기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를 통하여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본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9), p.31.
9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9), p.29.
94)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보고서(각주70), p.4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보는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기업체의 1.0%가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그 수치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95]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만 73건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가 있었다.[96] 이처럼 오늘날에도 개인정보유출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이슈가 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97]

2014년 1월 18일 창원지검 특수부가 고객정보 유출을 발표하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정보가 해킹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특히 해당 사건은 정보유출 확인을 위하여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자리만 입력하면 되는 간편한 인증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정보유출 확인 서비스조차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며 그 심각성을 더하였다.[98] 이는 카드사 부정사용방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99]의 개발 책임자이자, 용역업체 직원(이하 “피고인”라 한다)의 소행으로 밝혀진바, 피고인은 해당 시스템을 개발·관리하였기에 고객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었기에 이동식저장장치(USB) 상의 카드사 고객 정보를 빼내 대출광고업자 등에게 금품수수를 하며 정보를 제공하였다.

해당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는 개인의 신상정보 및 결제계좌, 카드번호 및 카드유효기간 등은 물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연봉, 혼인 여부, 신용한도 금액, 신용등급 등 다양한 정보 등 개인정보주체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

95)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6년 정보보호실태조사 기업부문」, 2017.02.26., p.66.
96) 안상민, “개인정보 침해사고(신고)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2015.10.08.,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7030100&dc=K07030100&boardId=1015&boardSeq=41987(최종방문일: 2017.05.05.).
97) 이는 2012년 10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1억 400만 여건이 유출된 사건으로써 2011년 7월에 발생한 네이트온-싸이월드 유출 사건(3,500만 건)을 월등히 뛰어넘는 규모였으며, 해당 사건은 오늘날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침해 구제에 관한 법제’에서 논한다.
98) 김종현, 「정보보호 법제도와 보안정책 -보안사고사례분석과 사고예방을 위한 IT보안기술-」, 홍릉과학출판사, 2016.08.31., pp.81-82.
99) 부정사용방지시스템이란 예컨대 “국내에서 소액을 쓰던 사람이 몇 시간 뒤 해외에서 거액을 결제한다거나 한 달에 평균 50만 원을 쓰던 사람이 갑자기 수천 만 원을 결제하는 것 등의 경우 카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해 고객에게 알리거나 결제를 중단시키는 시스템” 이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네이버지식백과-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5.01.2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9117&cid=59086&categoryId=59092(최종방문일: 2017.05.0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보가 유출되어 그 심각성이 보다 부각되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①카드사가 몇 년간 해당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해지한 사람 등 개인정보의 보관 의무가 없는 자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②카드사 등 금융업계에서도 기술 등의 제공에 있어서 하도급 계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바, 해킹과 같은 외부의 침입에 있어서 민감한 반면, 용역 등의 관리·감독에 소홀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고객 정보 유출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소극적이며 안일한 대처만 해왔다는 점 등이 본 사건 초래하게 하였다.

이에 카드사에서는 사과문 게재 및 카드재발급은 물론, 결제 내역 알림 문자 서비스의 무료 제공, 텔레마케팅(TM)금지 조치 등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내용을 밝혔으며, 본 사건으로 카드사의 사후 관리 비용, 피해배상금 등 자체추산으로 약 2,000억 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2014.02.03.기준). 한편, 현재 금융소비자연맹에서는 KB국민카드사, 롯데카드사, NH농협카드사, 3사 공동을 상대로 '카드 정보유출 공동소송'이 진행되고 있다.[100]

(2) '여기어때' 어플 사건

올해 3월 '여기어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가입자들에게 "○○님, △월 △일 XXX(숙박업소명)에서 즐거우셨나요"라는 문자가 전송된 바 있었다. 해당 앱은 모바일 숙박 예약 시스템으로 약 3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다. 해당 앱의 운영자는 해킹으로 인하여 약 4,000여 명의 가입자에 대한 성명, 연락처 및 숙박업소 이용내역이 유출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해커들은 가입자에게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는 협박성 음란문자를 발송한 바, 민감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이 통상적 견해이며, 이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단에서는 총 99,584명(340여 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101] 이러한 해킹에 대해 중국의 사드배치와 관련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해커들이 사용한 'SQL 인젝션' 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해킹방식으로써[102] 사실상 해당 앱이 고객들의 개인정보 및

100) http://kfco.org/activity/notice.asp?mode=view&board_id=notice&idx=869&pageno=1(최종방문일: 2017.05.06.).
101) "숙박앱 '어기어때' 개인정보 99만 건 유출 확인", <연합뉴스 TV>, 2017.04.27., http://www.yonhapnewstv.co.kr/tvscript/AKR20170427112000038/?did=2039m(최종방문일: 2017.05.06.).
102) 김연지, "여기어때, 中 탓하기엔 초보적 해킹에 숙박 날짜·장소까지 유출", <노컷뉴스>, 2017.03.27., http://www.nocutnews.co.kr/news/4756402(최종방문일: 2017.05.0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민감정보를 보안을 허술하게 하였기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앱의 운영자들은 사과문을 게재하며, 2차 피해의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팀 구성, 침해 예상 경로의 재점검, 보안장비의 추가 도입을 비롯한 고객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현재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었기에, 첫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이 적용되는 사례일 수 있어 항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103]

(3) ㈜KT 해킹 사건 등

㈜KT(이하 "KT"라 한다)는 2012년, 2014년, 2016년 총 3차례에 걸쳐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2012년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 기본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 민감정보를 비롯하여 다양한 개인정보가 해킹을 통하여 2012년 7월 13일경까지 총 8,730,435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특히 당시 KT는 경찰이 이를 통보하기 전까지 해킹에 관하여 인지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태가 심각하였다.

이후 2014년 3월 6일, KT홈페이지가 또다시 해킹되어 가입자 1,600만 명 중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해당 사건은 전술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개인정보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경찰수사 발표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인 '파로스 프록시(Paros proxy)'을 통한 신종해킹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하루 20만~30만 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통하여 총 115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최근 발생한 KT 개인정보유출사건은 제20대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써, KT 자회사 및 협력회사들이 SNS(네이버밴드)를 활용하여 가입자들의 주민등록증, 실제 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며 업무를 진행한 사건으로써, 직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여 문제시 되었다.해당 사건은 KT가 2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대표적인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보완 불감

103) 좌영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여기어때' 줄소송 전망...'징벌 배상' 첫 사례될까", <이투데이>, 2017.04.28.,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85775 (최종방문일: 2017.05.0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증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104]

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응 활동

개인정보처리자는 ①개인정보주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고지 의무를 준수하거나, ②법령상의 의무가 존재할 경우 또는 본인 확인 등을 위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③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을 제공하거나, ④민감정보의 수집이 존재할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주체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105]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수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바, 이에 관하여 안전성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거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침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침해 발생을 예정하고 대처·대응방식의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는 개인정보주체는 면밀히 검토하고 인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한 것과 유사하게 개인정보처리자 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를 '필요성을 못 느껴서' 또는 '의무사항인지 몰라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90%가 넘는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존재한다 할 수 있다.[10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107]로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관리 계획 수입·시행'이 94.2%로 가장 높았으며, 소상공인을 제외한 기업체들 중 약 67%정도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기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에 대하여 인지가 부족한 바,[108] 개인정보를 중요시

---

104) 전준범·심민관, "KT 보안불감증 여전…SNS(밴드)로 가입자 현관문 비밀번호 공유", <조선비즈>, 2016.09.26.,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6/2016092601060.html?Dep0=twitter(최종방문일: 2017.05.18.).

10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9), pp.35-38.

1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9), pp.39.

107)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 할 안전성 확보조치는 ①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③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속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④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⑤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⑥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가 있다. 이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김민섭, 앞의 논문(각주7), p.16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생각하나, 기업체 자체에서 보호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 또한 개인정보 해킹 및 유출 등의 피해로 발생할 수 있는 타격이 큰 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공공부문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이 94.2%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88.8%)', '담당자별 접근 권한 차등 부여, 비인가 직원 접근제한 조치(83.1%)',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78.0%)',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77.0%)',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71.0%)',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방지를 위한 조치(60.1%)'를 각각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대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09]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이 66.5%로 가장 높은 비율로 차지했으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49.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43.5%)', '담당자별 접근 권한 차등 부여, 비인가 직원 접근제한 조치(56.2%)',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23.9%)',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32.2%)',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방지를 위한 조치(16.3%)'으로 공공부문과 차이가 있었다.[110] 그러나 민간부문에서도 2014년 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공공부문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많이 취하고 있는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및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방지를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있어서는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주민등록번호의 법정수집 및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의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조항의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을 암호화 조치하는 비율은 2014년 대비 67.0%에서 82.7%로 상당히 증가하며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입증하였다.

---

10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9), pp.32-33.
1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9), p.38.
1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9), p.3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6> 개인정보 암호화 현황(개인정보보호위원회)[11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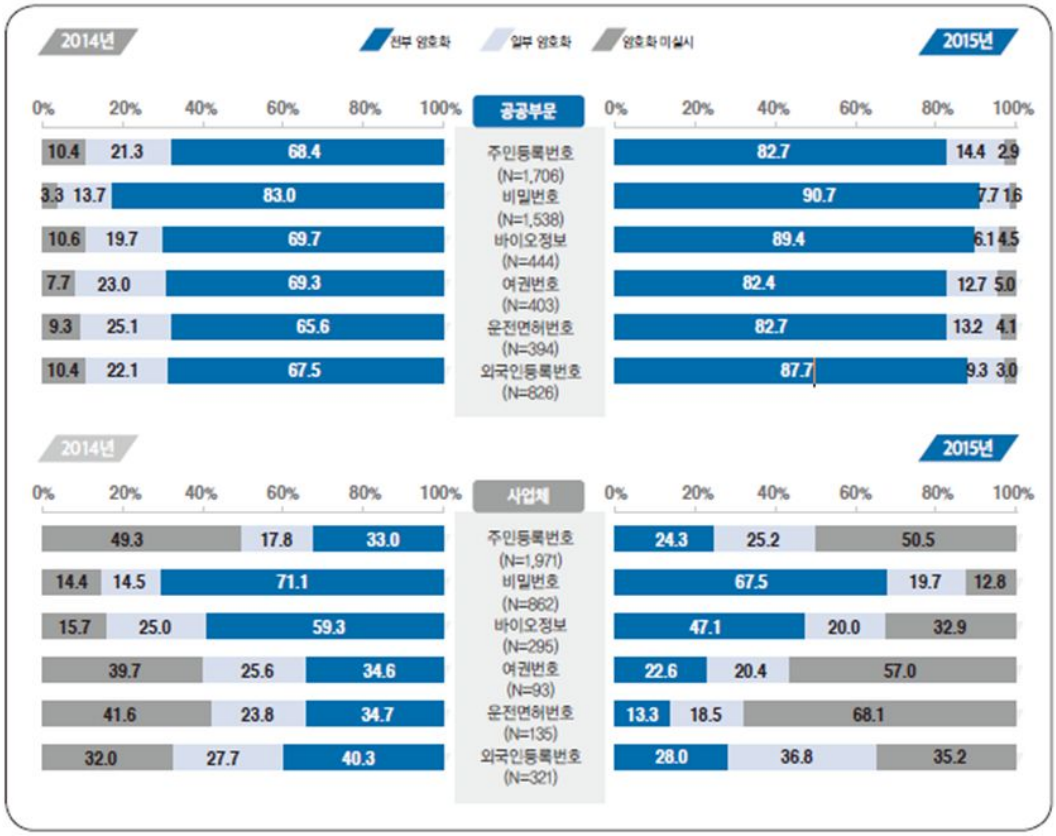

※ 출처: 2015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2015.)

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기업 중 84.9%의 사업체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있어서의 보호를 위한 안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며, 시행하고 있는 기술적 조치는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 조치',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이 각각 64.1%, 56.6%로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암호화저장, 보안서버 이용 등)' 45.0%로 낮았다. 또한 '접속기록의 위조/변조/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체가 36.8%, 'USB메모리, 외장하드 등 오프라인 데이터 저장'을 하는 경우가 27.9%로 뒤를 이었다.[112]

1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9), p.38.
112)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보고서(각주95), p.6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또한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암호화 여부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정보 등에 대하여 암호화를 하는 경우도 상당하나, 개인정보체가 목적에 부합되는 않는 경우 등은 수집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그림 7> 개인정보 암호화 현황(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113]

(단위: %)

※ 주1: 복수응답
※ 주2: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및 보완서버 이용 사업체 대상

또한 기업체에서는 해킹 등의 원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상황을 가정하여 이를 예방하고, 사후 처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약 78.0%의 기업체가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에 관한 매뉴얼 수립(58.1%)',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후 처리 방침 수립(45.7%)',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후 처리 방침 수립(45.7%)', '침해사고 발생시 내부 대응 체계 및 보고체계 확립(38.2%)', '개인정보 피해 발생 시 관련기관 공지(35.9)', '개인정보 침해 발생 징후 목록의 작성 및 관리(29.9%)',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상황 점검 및 증거수집 절차의 확립(26.3%)', '외부 전문가 활용을 위한 비상연락망 유지(24.4%)', '개인정보 보호 관련 관리체계(FMS, PPL) 도입 및 운영(12.6%)'이 있다.[114]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활동에 관하여 복수

113)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보고서(각주95), p.65.
114)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보고서(각주95), p.6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응답으로 설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기술적 보안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하기 전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및 보유기간의 경과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도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사전적 보완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공공부문, 기업체 등은 이를 '지체없이 파기'하는 경우가 공공부문에서 87.5%, 민간부문에서 51.3%로 가장 높았으나, '특별한 조치 없이 그대로 둠'으로 응답한 경우도 각각 1.8%, 24.4%로 응답하여[115] 특히 민간부문에서 제2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관한 정부의 감독·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전적 보안체계에 주안점을 두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5년 1년 간 개인정보의 침해·유출 사고를 경험한 기업체는 전체 기업체 중 1%에 불과하였기에 다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중 관계기관에 문의하거나 신고한 기업체는 16.7%로[116] 사후적 대응에 있어서 매우 미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침해 구제에 관한 법제

「정보통신망법」 제52조에서는 정보의 안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 등과 같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59조와 「정보통신망법」 제52조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에 대한 접수 및 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1. 구제의 필요성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의 정보처리가 가능해지며, 해당 정보들의 유통이 원활한 바, 개인정보의 불법이용 또는 유통이 쉬워지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오

1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9), p.41.
116)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보고서(각주95), p.6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늘날 개인정보는 과거의 의미의 개인정보는 물론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및 판단·평가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정보[117]를 의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써의 역할과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등이 가미되어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118]

이러한 개인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저장되고 있는 바,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침해는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첫째, 개인정보 침해는 다른 사고와 달리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다량의 개인정보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같이 한 번의 유출로 엄청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양이 피해 받게 되었다. 둘째, 개인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없다. 즉,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되지 않거나, 2차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주체는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셋째, 개인정보는 단순히 사생활의 유출이 아니라 오늘날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 등에 직접적 연관이 있어 매우 민감한 사항이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 및 정도에 따라 그 정보의 가치는 천차만별이 될 것이다. 이에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통해 이를 악용하여 광고성 문자메시지의 발송 등을 통한 정신적 피해 또는 보이스피싱 및 소액결제 등을 통한 금전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망 및 정보통신기술은 오늘날 영토라는 제한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개인정보의 침해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하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거나 오·남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게 되어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특정한다고 하여도 국내법상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119]

과거 우리나라는 IT기업 및 과학기술발전의 '성장'을 중시하였던 바,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그 침해에 있어서는 무지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개인정보주체 스스로 권

117)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개인정보를 ①일반정보, ②가족정보, ③교육 및 훈련정보, ④병역정보, ⑤부동산정보, ⑥소득정보, ⑦기타 수익정보, ⑧신용정보, ⑨고용정보, ⑩법적정보, ⑪의료정보, ⑫조직정보, ⑬통신정보, ⑭위치정보, ⑮신체정보, ⑯습관 및 취미정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http://privacy.kisa.or.kr/kor/privacy/privacy01_new.jsp(최종방문일: 2017.01.29.).

118) 임규철, 앞의 책(각주51), p.23; http://privacy.kisa.or.kr/kor/privacy/privacy01_new.jsp(각주120).

119)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2017.01., p.7; 진대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근거와 피해구제제도", 「INTERNET & SECURITY FOCUS」1,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07., pp.7-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리를 보호하며 강화하고자 하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고, 개인정보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하며, 경우에 따라서 의료정보 및 범죄전과정보 등의 민감정보의 유출 등은 개인정보주체의 인격체에 엄청난 타격을 불러올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구제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것이다.

2. 현행 개인정보 침해 구제 체계

가. 사전적 구제방안: 금지청구권

오늘날 정보의 복제 및 유통이 원활하며, 그 전파 속도는 책정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정보주체는 물론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막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예방하고 사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주체는 ①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여부, 동의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③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을 요구할 권리, ④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⑤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의 침해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통하여 사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바, 이를 금지청구권과 침해제거청구인 삭제 요청에 대한 임시조치가 존재한다.

(1) 금지청구권의 인정

금지청구권이란 본디 「민법」 상의 개념으로써 소유자가 동산·부동산의 물건에 대한 물권 행사에 있어서 완전한 실현이 방해받고 있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 등을 청구함으로써 물권의 완전한 행사를 실현하고자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에 기하여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120] 이는 물권이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권이기에 배타성에 의해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120) 지원림, 「민법강의」 제10판, 홍문사, 2012., pp.447-44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개인정보에 있어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개인정보는 물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고, 인격권으로써 인정되는 바, 개인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있어서의 완전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격권의 침해는 명예의 회복 또는 금전배상으로 완전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논의되고 있다. 우리 판례는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121]고 판시하였던 바, 인격권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2) 금지청구권의 행사

그러나 이러한 금지청구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서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동법 제37조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민법」 제214조 상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바, 개인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할 것이다.[122] 한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와 달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한다고 하여도 개인정보처리자는 ①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121) 대판 2005. 1. 17. 2003마1477 결정.
122) 그러나, 단순히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정정·삭제하고자 한다면 방해예방의 측면이 강조될 것이나, 잘못된 개인정보의 개시 또는 인격권 침해 등의 문제 발생을 우려하여 정정·삭제를 한다면 이는 방해제거의 측면이 강조될 것인바, 개인정보의 정정·삭제가 「민법」 상의 방해예방청구권의 성격인지, 방해배제청구권인지에 관하여는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오대한, "개인정보권의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15., p.14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없는 경우, ④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123]

한편, 「개인정보보보호법」 상에는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다른 법률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다른 법령으로부터 인정되는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나, 「민법」은 물권에 관한 규정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준용하기 어려울 것이나, 특별법에 규정이 부재할 경우 일반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상에서 인정되는 바, 일반법의 지위를 가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준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판례 또한 과거 개인정보권의 침해에 대하여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었다.[124]

나. 사후적 구제방안

(1)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서는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우리 법제에서는 「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두고 있어, 이외의 경우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의 규정에 반해,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그 성질에 대하여는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학계에서는 어느 하나에 국한하지 않고,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위반한 사항과 개인정보의 처리가 미진하였기 때문에 유출 등의 침해가 발생한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125]

한편, 우리나라는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자기의 고의나 과실에 대한 가해행위에

123) 「개인정보보호법」(각주72) 제37조제2항.
124) 대판 2011. 9. 2.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125) 한편, 개인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가 계약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생의 성질만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고형석, "개인정보침해와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저스티스」 통권 제145호, 한국법학원, 2014.12., pp.73-7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있어서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존재하는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와 제39조의2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면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실은 경과실책임과 중과실책임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과실이 존재할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2가 적용될 것이며, 중과실이 존재할 경우에는 제39조제3항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침해 및 유출은 해킹 등 실제로 가해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부분 많이 존재하는 바, 개인정보처리자가 본인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면 개인정보주체는 손해 및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상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상 무과실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관하여는 '제4장 개인정보 침해 구제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개인정보의 침해 및 유출에 관한 사항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손해배상 규정에 적용을 받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상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사법으로써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예컨대, 「개인정보 보호법」 상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수일 경우는 「민법」 제760조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이 준용되게 된다.[126]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실질적으로 물질적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의 측면보다는 명예훼손 등의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으로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측면이 강할 것이기에 「민법」 제751조의 규정 역시 준용될 수 있다.

(2) 개인정보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과거 헌법재판소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또는 온라인 장터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 사고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1과 "신용카드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2는 각각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주민등록법(법률 제8422호)」 및 「주민등록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615호)」 상에는 지방자치

126) 고형석, 앞의 논문(각주125), p.6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단체에 주민 개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규정만 존재하였을 뿐,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유출로 인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부처분'을 하였던 바, 청구인들은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과 헌법소원을 각각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개인정보의 연결자 역할을 하는 중요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등과 같이 주민등록번호의 잘못된 이용에 대비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개인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개인에 관한 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구축되고 그 번호를 통해 또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key data)로 사용되고 있다. … 특히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목적별로 식별번호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 걸쳐 통합 사용되고 있는바, 공공부문에서 행정사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이외에 민간부문에서도 각종 상거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등 국민의 사회경제생활에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국가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오늘날 현대사회는 인터넷의 발달과 전산화의 실시로 인해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 기능을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고,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개인정보와 연계되어 각종 광고 마케팅에 이용되고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등 해악이 현실화되고 있음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쉽게 목도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아무런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과도한 침해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 밝히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127]

이에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4를 신설하여 ①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④「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⑥「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⑦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128]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을 신청하게 되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며, ①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②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③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129]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

127) 이러한 결정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한다고 하여도 ①기존정보와의 연계시스템을 통한 본인확인 가능, ②개인식별기능을 하는 공인인증서 등의 갱신 등과의 비교, ③입법자에 의해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한정하고 변경 주체를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국가기관이 심사하여 범죄은폐 또는 신분세탁 등의 변경절차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점, ④2010년 이후 개명신청이 평균 16만 1천여 건에 달하고 인용률이 94.1%에 달하지만 사회적인 혼란이 없었다는 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은 개인정보의 문제일 뿐, 이를 변경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개인 식별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제공 등 공익의 목적달성이 보다 크며, 개인정보 피해에 관하여는 민·형사상의 구제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반대견해가 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헌재 2015. 12. 23. 2013헌바68 등.

12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 ②「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③「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④「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 등, 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⑦「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로 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주민등록번호' 올해 5월 30일부터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17.05.02., http://www.moi.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58363(최종방문일: 2017.05.07.).

12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①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②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주민등록번호의 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본 조항의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밝히며[130]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신청되며, 행정자치부 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의 출범되었다.[131]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인용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를 제외한 6자리(지역번호 4자리, 등록순서, 검증번호)가 변경되게 된다.[132]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

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요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의하여 진행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2001년 12월에 발족된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련한 분쟁사건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조정하여 해결하는 준사법적 기구”로 역할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개인정보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서 합의를 권고하고, ①「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 ②「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

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④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전에 사망한 경우, ⑤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행정자치부 보도자료(각주128).

130) 행정자치부 보도자료(각주128).

131) 고동욱, “”주민번호 유출됐다면 오늘부터 변경 신청하세요“”, <연합뉴스>, 2017.05.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9/0200000000AKR20170529135800004.HTML?input=1195m(최종방문일: 2017.06.02.).

132) 한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대하여 그 가치가 실제적으로 10원 정도의 가치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변경 후에도 유출되는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 회의적인 견해도 존재하며, 2017년 6월 2일 기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그쳤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김나한, “"주민등록번호 10원 가치나 있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회의적인 사람들”, <중앙일보>, 2017.06.02., http://news.joins.com/article/21632529(최종방문일: 2017.06.0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침해사항, ③「신용정보법」 상의 개인정보 침해사항, ④「의료법」 및 「민법」 등에서 규정하고 IT는 개인정보 침해사항 등에 대하여 ❶조사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❷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❸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포함하여 조정을 하게 된다.[133]

(2)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는 그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며, 개인정보주체의 인격권·명예권에 대한 완전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바, 금전피해 등의 여타 다른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이 있어, 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이하 "분쟁조정제도"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의 발생에 있어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바,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신속,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승낙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당사자에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이러한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집단분쟁조정으로 구분되며 그 절차가 상이하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①분쟁조정 신청 및 접수, ②사실조사, ③조정 전 합의, ④조정결정으로 진행되며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한 반면, 집단분쟁조정의 경우 각각의 개별 개인정보주체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상이하나, 이를 개별적으로 심사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일괄적으로 해결하고자 요건을 심사하는 등의 세부 절차가 존재한다. 집단 분쟁조정제도는 신청인인 개인정보주체 50인 이상이 모여 진행하게 되며, 신청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공고하여 분쟁해결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주체를 추가적으로 모집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결정을 통하여 절차가 완료되게 된다.[134]

---

133)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kopico.go.kr/intro/personInfoIntro.do(최종방문일: 2017.05.07.).
134)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각주13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개인정보 분쟁조정 현황

2015년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총 134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였다.[135]이는 2014년 395건 대비 상당히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2014년에 전술하였듯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급증을 보여줄 뿐, 다시 원상회복을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136]

<표 6>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현황(연도별)[137]

(단위: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조정 전 합의			21	32	40	21	15
위원회 분쟁조정	인용결정	조정성립	30	29	14	12	20
		조정불성립	19	15	10	20	15
	기각		55	20	8	11	17
	상담취하 또는 각하		1	47	101	331	67
합계			126	143	173	395	134

※ 주1: 2011년 기각결정 건수 55건 중 52건은 동일한 내용으로 5개 사업자에 대하여 분쟁조정 신청한 것을 병합하여 처리한 건임
※ 주2: 2014년 각하결정 건수 331건 중에는 카드3사 관련한 민원이 251건 및 집단분쟁 3건 등이 포함되었음

상단의 표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에 있어서 조정성립율은 약 70%에 이른다고 할 수 있어, 전년대비 8%p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각', '상담취하 또는 각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등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들이 개인정보의 문제를 넘어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민원이

135) 이는 분쟁조정 절차에 있어서 만의 현황일 뿐, 개인정보 피해구제 민원은 2015년 총 152,151건이 접수되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15년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2016.07.21., p.20.
136) 2015년 기준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접수한 현황을 살펴보자면 ①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18건, ②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4건, ③고지한 범위를 넘어선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37건, ④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가 9건, ⑤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가 2건, ⑥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불응이 6건, ⑦개인정보 취급방침 수정요청 등의 기타 개인정보 침해 사항이 58건으로 총134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의 보고서(각주135), p.27.
137)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의 보고서(각주135), p.2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증가하였기 때문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138]

한편,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결정에 있어서 합의를 우선 권고하고,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을 결정하게 되는 바, 그 내용으로는 ①제도개선, ②제도개선 및 손해배상, ③손해배상, ④기각, ⑤상담취하 또는 각하가 있다.[139]

분쟁조정위원회의 제도개선 결정은 피신청인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에게 인격권 및 명예권 훼손 등의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신청인(개인정보주체)가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것보다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제도적 개선만을 원하였을 경우에 내려지게 된다. 또한 손해배상 결정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 등 개인정보주체의 침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였고,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내려지게 되는 결정이다.

2015년 기준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신청한 사유 중 '고지한 범위를 넘어선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첫째, '고지한 범위를 넘어선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은 2012년 이래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전년대비 5건이 증가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관한 구체적 침해 내용을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한 고객의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고객의 동의 없이 홍보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보험사나 온라인쇼핑몰 등 제휴 업체에 제공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둘째,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구체적으로 "멤버십 회원가입, 온·오프라인 이벤트, 제휴사 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시 고객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고객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밝혀졌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는 2014년에 급증하였다가 2015년 급감하였는바, 이는 전술하였듯 2014년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문이다.[140]

이러한 분쟁조정 접수 유형을 살펴보건대,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노력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 부족은 개인정보보호의 교육을 통하여 인식개선 및 업무상 실수에 대한 대비 등을

13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135), p.25.
139)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135), p.26.
140)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135), pp.27-2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통하여 점차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141]

다. 조정 사례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결정하기 전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절차이다. 따라서 이에 합의를 권고하고 이를 수락한 사례도 존재하나,[142] 실제로 2015년 조정이 이뤄진 경우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신청인의 피신청인의 병원에서 아내의 산부인과 관련 질병 수술에 관하여 보호자로써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수술에 있어서 관련이 없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는 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서 양식을 2014년도 개정된 양식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려던 시점에 해당 사건이 발생하였고, 본 사건을 계기로 동의서의 양식을 바꾸고자 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①「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의 수집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집·처리가 불가능하며, ②「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도 '수술동의서' 작성 시 환자의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③환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환자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명백히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수술동의서' 등의 환자 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관련 양식을 개선하고,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등을 통한 유사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계획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하며 이행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143]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제품 도입을 제안하는 메일을 수신 받아, 피신청인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로에 대하여 2차에 걸쳐 문의를 하였으나, 피신청

14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135), pp.27-28.
14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135), pp.112-116.
143)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135), pp.30-3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은 박람회에서 신청인의 명함을 통해 수집하였다고만 답변하였다. 이에 신청인인 박람회를 통해 수집한 명함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홍보목적으로 이용한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당시 박람회에서의 신청인의 회사부스에 방문하여 탁자에 비치된 신청인의 명함을 수집하였고, 이에 대한 별도의 공지가 있었더라면 수집을 하지 않았을 것이나, 박람회의 특수성 및 통념에 의거, 공개된 위치에 명함 및 홍보물을 비치해 둔 바, 이를 수집함에 있어서 특별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 신청인의 항변에 대해 사과 및 양해를 구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박람회의 특성 및 신청인의 명함 비치행위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된다는 의사표시라고 인정되기에 피신청인이 이를 수집함에 있어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집한 것은 아니라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보안관련 솔루션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바, 피신청인이 보안관련 솔루션에 관한 메일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지불마케팅(할부금융판매)에 관한 메일을 보냈기에 이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한 목적에서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의사 범위를 넘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①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박람회에 비치된 명함을 통해 신청인의 명함을 수집한 점, ②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였다는 정황을 찾아 볼 수 없고, 직접 신청인 본인에게만 광고목적의 이메일을 발송한 점, ③신청인의 요청으로 즉시 사과하는 답변을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사건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향후 피청구인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며 본 조정신청을 기각하였다.[144)]

신청인은 피신청인(결혼중개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남 주선 등의 영업목적의 전화를 수신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수집 경위에 대한 문의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대학교 동문 주소록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는 답변을 하여, 신청인은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특정 대학교 의대 동문록에 자사광고를 게재하고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 등의 동문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동문록을 수령하여 개인

144)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135), pp.45-4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보주체들의 성명, 학력(대학교 및 전공), 근무병원, 직책, 진료과목, 병원주소, 병원 연락처, 이메일, 핸드폰번호를 수집한 것이 인정되었다. 피청구인은 특정 대학교와는 자사의 광고를 계약만을 하였을 뿐,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동의는 부재하였고, 이를 영업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바,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본인의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 등으로 정신적 침해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여 3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정과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의 점검 및 삭제,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의 재발대책 수립 등을 조정 결정하였다.[145]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신청인은 2010년 피신청인의 병원에 방문하여 탈모치료를 위한 진료를 받았고, 이후 내원한 적이 없었으며, 내원당시 '문자메시지 수신 부동의'를 하였음에도 2014년 5월경부터 피신청인의 병원에서의 시술안내 및 가격할인 등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수신하게 되어 신청인은 본인은 치료의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영업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않았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문자메시지 수신 부동의'를 직원의 실수로 수신동의 처리가 되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고, 문자메시지는 단지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을 통한 고객들과의 정보공유의 목적만이 존재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영업 및 광고목적 등을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한 신청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부존재하였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에게 100,0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을 하였다.[146]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요가 강좌를 쿠폰을 통하여 등록하여 이용하였으나, 수강종료 이후 본인의 개인정보의 파기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또한 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신청인이 5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해당 문자메시지는 회원권 재등록 이벤트를 위하여 수강기간이 도과된 회원들에게 보낸 것에 불과한 것이며,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한 회원들에 대한 개

145)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135), pp.52-55.
146)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135), pp.63-6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정보는 즉각 삭제를 했음에 반해, 신청인은 개인정보 삭제요청을 하지 않아 따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을 한 것이며, 이는 절대 외부로 유출되거나 사적이용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파기요청이 없었다고 하여도, 탈퇴한 회원의 경우는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민원 대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즉각 파기했어야 함이 인정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 인정되어 신청인의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우려 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100,000원을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결정하며,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147]

(3)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신청인은 서랍장 등 사무용 가구를 주문하며 소셜커머스 업체인 피청구인에 주문 상품의 공급 및 상품 배송 등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였다. 상품 배송 이후 신청인은 제조사에게 상품관련 문의를 하던 중 본인의 개인정보가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 없이 제조사에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고, 제조사와는 제품 판매를 위탁하며, 개인정보 취급 상 위·수탁의 관계에 있어, 본인의 홈페이지를 통한 제품 주문의 경우, 고객 주문정보 및 매출정보에 대한 원활한 확인, 운영관리 및 상품 배송 및 A/S와 고객응대의 책임이 제조사에 존재하는 바, 주문 고객의 개인정보를 전달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이 상품을 판매 당시 신청인 등 개인정보주체에게 제3자로의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할 것이나, 이를 신청인이 공지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것이 되기에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를 위반한 것이나, 피신청인이 이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에 이익을 위하여 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신청인에게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신청인의 청구는 기각하나,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있어서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의 수립·이행을 촉구한다고 결정하였다.[148]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선거관리위원으로써 주민들

147)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135), pp.66-69.
14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135), pp.70-7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요청에 따라 뇌물을 수수한 입주자대표의 해임투표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해임투표결과를 부착하는 신청인들의 CCTV정보 및 선거인 명부를 제3자인 입주자대표에 제공하였고, 입주자대표는 이를 활용하여 신청인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들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정보 및 선거인 명부를 제3자에게 제공한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및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CCTV정보를 입주자대표에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선거인 명부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소명하며, 신청인들은 해임투표에 있어서 목적달성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것이라며 주장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3,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제1항,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에 따라 CCTV정보는 유출될 경우 그 파장이 더 큰 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보다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신청인들 등의 정부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거나, 법관의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절차 없이 입주자대표에서 CCTV정보를 제공한 바, 이는 관련법령의 위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는바 각각 2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재발방지 개선을 조정 결정하였다.[149)]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신청인은 피청구인(공단) 주최로 시행된 필기시험을 응시한 후, 문제에 오류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한 이후 신청인이 시험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취득 점수 등 자신이 재학 중이던 교수 및 학우들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 본인과 유사한 사례인 김OO과 함께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공식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하여 부인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본인이 느낀 수치심 등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조정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을 접수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담당직원이 민원인들의 사진 및 연락처를 무단으로 촬영한 부적절한 처신은 발견

149)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135), pp.79-8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였으나, 이를 비위한 정황은 포착하지 못하였고, 무단으로 촬영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불분명한 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진행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경영평가의 지표로 반영하여 차후 적발 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게 조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본인의 정답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담당자인 A교수에 문의하였고, 이를 A교수가 본인의 모교 교수인 B교수에 도움을 요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본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청구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했음에도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안전성 확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하지 않은 바, 신청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는 물론,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청구인이 상당기간 개선 및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않아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가 보다 증가된 바, 1,000,000원의 손해배상과 제도개선을 조정 결정하였다.[150]

150)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앞의 보고서(각주135), pp.84-8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4장 개인정보 침해 구제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절 개인정보 침해 구제법제의 한계와 문제점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한 피해는 대규모로 이뤄지며, 동시에 여러 개인정보주체의 피해가 발생하며, 그 피해에 있어서도 본인 스스로 즉각적인 인식이 어렵고, 이로 인한 2차적 피해의 발생이 가능하고, 피해를 구제함에 있어서 인격권이기에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술하였듯 개인정보주체의 신속한 피해 회복, 2차 피해확대 방지 및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의 구제방안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상 마련되어 있다.

또한 본래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변론주의에 입각한 일반적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상 단서를 둠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입증책임을 일부 전가하면서 개인정보주체에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등의 개인정보주체에 유리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에 있어서 완전한 보호가 되지 않는 바, 이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정보 개념 및 분류의 불명확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를 규정하는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동조 정의규정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오늘날 정보화 사회 현실에 비추어 해석한다면 이는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으로 확대해석 될 수 있다.

<표 7> 개인정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 예시[151)]

구분	특징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쉽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사진 등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의료보험번호, 여권번호 등 ◆ 생체정보: 지문, 홍채, DNA 정보 등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구분	특징
	◆ 기관, 단체 등의 이용자 계정: 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 ◆ 기타 유일 식별번호: 군번, 사업자등록번호 특성(별명), 식별코드(아이디, 아이핀 값)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특성: 성별, 생년, 생일, 연령(나이), 국적, 고향, 거주지, 시군구명, 우편번호, 병역여부, 결혼여부, 종교, 취미, 동호회·클럽, 흡연여부, 음주여부, 채식여부, 관심사항 등 ◆ 신체 특성: 혈액형, 신장, 몸무게, 허리둘레, 혈압, 눈동자 색깔, 신체검사 결과, 장애유형, 장애등급, 병명, 상병코드, 투약코드, 진료내역 등 ◆ 신용특성: 세금 납부액, 신용등급, 기부금, 건강보험료 납부액, 소득분위, 의료급여자 등 ◆ 경력특징: 학교명, 학과명, 학년, 성적, 학력, 직업, 직종, (전·현) 직장명, 부서명, 직급, 자격증명, 경력 등 ◆ 전자적 특성: PC사양, 비밀번호, 비밀번호 질문/답변, 쿠키정보, 접속일시, 방문일시, 서비스 이용기록, 위치정보, 접속로그, IP주소, MAC주소, HDD Serial 번호, CPU ID, 원격접속 여부, Proxy 설정여부, VPN 설정 여부, USB Serial 번호, Main Border serial 번호, UUID, OS버전, 기기 제조사, 모델명, 단말기 ID, 네트워크 국가 코드, SIM Card 정보 등 ◆ 가족특성: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여부, 가족정보, 법정대리인 정보 등 ◆ 위치특성: GPS 데이터, RFID 리더 접속 기록, 특정 시점 센싱기록, 인터넷 접속, 핸드폰 사용기록, 사진 등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주체의 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특별한 쟁점이 없을 것이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불분명하고 불명확하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활용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과도한 정보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요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특히 전자의 경우는 가치 있는 정보의 도출이 불가능할 수 있는 바, 추측컨대 후자의 경우를 대부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바일 기기정보, PC등 하드웨어 정보, 쿠키(Cookie)에 저장된 난수 형태의 고유 ID, IP주소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고, 우리 판례 또한 이에 대하여 일관된 입장을 취하지 않는 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법적안정성 저해로 이어지게 된다.[152)]

151) 권현준 외,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04.22., pp.92-9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예컨대, 개인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통장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은행 보안카드 번호 등이 유출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성명보다는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주체에 관한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바, 그 침해가 보다 클 것이다. 또는 연락처가 유출됨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주체가 지속적인 광고성 문자메시지 또는 선거운동광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은행 보안카드 번호를 결합하여 차명계좌의 개설 등으로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술한 실제로 금전적인 손해라면 그 배상금액의 확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될 수 있으나, 정신적 피해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가치 그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인 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개인정보 단체소송과 분쟁조정제도의 관계

전술하였듯 개인정보는 다량의 데이터베이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유출, 오·남용 등의 원인으로 침해되는 바, 그 침해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주체 1인이 구제를 받기 위하여 조정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단체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153]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6장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동법 제7장은 “개인정보 단체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단체소송의 경우 동법 제51조에서 “단체는…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 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권리침해대상이 개인정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적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해결의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주요국의 소비자 권익침해의 집단적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절차 등을 차용하여 도입되었다.[154]

그러나 개인정보 단체소송제도와 분쟁조정제도는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 상

152) 권현준 외, 앞의 논문(각주151), pp.93-94.
153) 그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구제절차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 및 소액의 배상액 등을 원인으로 소송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윤주희, “개인정보 침해현황과 이용자 보호”, 「법학논총」 제33권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04., pp.345-346.
154) 조만형,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제60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pp.372-37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남에도 단체소송과 분쟁조정제도를 연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첫째,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제도를 필요적 전치주의로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조정제도는 전술하였듯 제도개선은 물론 손해배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단체소송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양 제도는 서로 다른 목적 및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소송이 분쟁조정제도의 불복제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제되고 있다.

둘째, 분쟁조정제도는 국가기관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행정심판의 역할과 유사하다는 측면이 있으나, 조정 결과의 승낙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민사상 1심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즉,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행정처분의 성격으로 인정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셋째,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오늘날 사람들은 인터넷 카페 또는 홈페이지의 개설을 통하여 피해자 집단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집단은 분쟁조정제도 상의 집단분쟁조정은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 상 '단체'라 하여 「소비자기본법」 상의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단체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단체소송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실상, 법률상 분쟁을 전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단체소송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만을 소송물로 하고 있다. 그 취지는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상의 소비자단체소송을 통하여도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이나,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오·남용은 소비자일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 상 구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단체소송의 제소 요건이 보다 완화되고 있는 바, 사실상 개인정보 상의 단체소송은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55]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문제

가. 무과실책임의 부재

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과실책임

155) 이인곤,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과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법률실무연구」 제2권제2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4.10., pp.196-19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주의를 원칙적으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의 발달 및 기계의 고도화 등으로 고의 또는 과실의 발생에 있어서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바,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을 비롯하여, 「광업법」, 「근로자재해보상보험법」, 「국가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제조물책임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개인정보의 침해에 있어서는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배상을 할 채무가 있고,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 오늘날 개인정보의 침해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특정한다고 하여도 이를 처벌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 많아, 개인정보주체의 침해는 발생하였으나, 구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나. 손해배상금액의 확정

2014년 7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대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바, 전통적인 손해배상제도만으로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없는 바, 징벌적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었다.[156] 이후 2015년 7월 6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기에 오늘날 「개인정보보호법」 상 도입되게 되었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 또는 침해자의 이득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법률이 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을 배상토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157]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며,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침해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156) 의안번호19111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4.07.11.
157) 류승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법학연구」 제47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02., p.141; 김태선, "미국 배액배상제도 및 법정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민사법학」 제66권, 한국민사법학회, 2014., pp.240-241; 손정달,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9권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pp.178-17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술한 "개인정보의 개념 및 분류의 불명확성"과 연계될 수 있는 바,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 피해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그 정보의 가치가 상이한 바, 이를 일률적으로 금액 책정을 하는 것은 부당할 것이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법원은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손해액을 규정한 것은 불확정 개념으로써 또 다른 유권해석이 존재하여야 하는 바, 법관의 판단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3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개인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자에 과도한 배상이 되지 않도록 한정한 것으로 보이나, 예컨대 연예인, 정치인, 대통령 등 개인정보의 가치가 통상 국민에 비하여 경제학적으로 높은 경우, 개인정보 자체만으로도 침해가 발생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나, 이를 악용하여 2차적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는 300만 원이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300만 원으로 제한한 것 또한 개인정보주체의 완전한 권리구제의 한계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한은 3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하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부재하여, 극단의 경우 개인정보주체의 피해발생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을 0원으로 선고할 수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158]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었다. 다만,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①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②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③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④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⑤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⑥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⑦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⑧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된 이후 ①실손액 배상원칙과의 부조화·부적합, ②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에 대한 이중처벌의 우려 존재, ③징벌

158) 송오식,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합리적 구제방안 -사권으로서 개인정보권의 정립을 위한 시론-, " 「법학논총」 제36권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03., pp.763-76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적 손해배상의 남용우려 존재, ④판사들의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과도한 재량 문제 발생 등을 원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으나,[159]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어떠한 연유로 3배로 한정되었는지에 관한 논의는 부재하다.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된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3배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면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논의 없이 3배로 한정한 것은 개인정보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일부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제2절 개인정보 침해 구제 논의[160]

전술하였듯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이를 활용하여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목적 외 이용, 유출 등 개인정보의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대한민국국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제19대국회, 제20대국회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하여 많이 언급된 내용 위주로 기술하며, 기타 사항으로는 ①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제공에 있어서의 동의 절차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 도입,[161] ②개인정보 관련 범죄행위를 통한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도입,[162] ③개인정보의 권리 강화,[163] ④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확대,[164] ⑤개인정보 동의 방법 개선[165] 등의 개정안 내용이 존재한다.

---

159) 송동수·성기만,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토지공법연구」 제67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pp.184-185; 윤용석 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제12권제24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11., p.17.
16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최종방문일: 2017.05.25.).
161) 의안번호1913932, 「개인정보 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2015.02.05.; 안번호19123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대표발의)」, 2014.11.05.; 의안번호190708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3.09.30.
162) 조원진의원안(각주161); 의안번호191008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2014.04.07.
163) 강은희의원안(각주161), 조원진의원안(각주161).
164) 변재일의원안(각주161).
165) 변재일의원안(각주16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집단소송의 도입·단체소송 관련 개정

가.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안과 이상직의원 대표발의안[166]

해당 개정안들은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등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등을 제정이유로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 등으로 제소할 경우, 그 기판력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개정안들에서는 첫째, "개인정보 집단소송"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집단소송의 제소·진행 및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총원", "구성원", "대표당사자"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다. 둘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한정되어 있는 권한을 "조정 및 손해배상명령[167]을 위한 사전조사 등"으로 확대하였다. 셋째, 현행 단체소송과 별개로 '집단소송'을 도입하며 그에 관한 적용범위,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요건, 소송허가 요건, 소송허가 결정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준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나. 변재일의원 대표발의안[168]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단체소송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제19대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본 개정안에서는 현행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장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로 개정하며, 각 절로써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구제절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등, 개인정보 단체소송으로 개인정보 침해 발생에 있어서 개인정보주체가 시도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전부 명시하였다. 본 개정안은 집단소송을 별도로 도입하기보다는 현행 단체소송의 대상을 권리침해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주체의 재산적 피해 구제 및 권리침해'로 확대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단체소송에 정보주체의 재산적 피해

---

166) 두 개정안은 각각 제19대국회, 제20대국회에서 발의된 것으로 그 내용은 동일한 바, 함께 기술하도록 한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의안번호200506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2017.01.12.; 이상직의원안(각주162).

167) 해당 손해배상명령은 법원이 아닌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사한 뒤 행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168) 변재일의원안(각주16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구제를 구하는 소송을 포함시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를 보다 수월하게 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단체소송의 내용을 확대하는 개정 내용은 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피해구제 및 손해의 전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 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나, 덧붙여 "단체소송은 '당사자처분권주의'라는 소송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소송 유형으로서, 아직까지 우리 법제에는 소극적인 권리구제에 한하여 도입되어 있는 만큼, 이를 손해배상의 이행 청구까지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것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그 적절성·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이라는 우려를 함께 제시하였다.[169]

다. (새누리당) 권은희의원 대표발의안[170]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이 어렵기에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대상이 한정적이기에 권리구제수단으로써 미흡하며, 원고적격의 대상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의 제안이유를 밝히며, 개인정보의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에 있어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단체소송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발의되었으나, 제19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상 단체소송을 제소할 수 있는 단체를「소비자기본법」에 한정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범위를 확장하며, 단체의 목적 및 정회원 수 등을 일절 요건으로 삼지 않았으며, 비영리민간단체에 있어서도 현행 100명, 5천명으로 과도한 수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을 각각 30명, 1천명으로 하향조정하였다.

라. 이상민의원 대표발의안[171]

본 개정안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상 단체소송 제소요건이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이 또

169)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4.02., pp.41-47.
170) 의안번호1909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2014.02.03.
171) 의안번호190138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12.08.2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 제19대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현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현행 분쟁조정제도를 전치주의로 하지 않으며, 이와 별도로 신속한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위해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도개선, 손해배상, 제도개선 및 손해배상을 업무로 진행하고 있는 바, 현행과 동일하게 분쟁조정전치주의를 운용하더라도 권리침해의 행위가 방치 및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72]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권한 강화 및 조직 개편

가.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173]

2017년 5월 11일 소병훈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직권조사권, 시정명령권, 고발 및 징계권고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기관으로 격상시키며, 보호위원회의 구성, 임명, 보호위원회에서의 회의,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결격사유, 심의·의결에 있어서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며,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 신설을 규정하였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에 한정하지 않고, ①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집행, ②개인정보에 관한 법령·제도 및 개인정보 수집실태에 관한 조사·연구·개선, ③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고시, ④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⑤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피해구제 및 조정, ⑥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 개발의 지원 및 보급, ⑦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⑧개인정보 보호단체의 지원 및 자율규제활동의 촉진, ⑨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⑩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⑪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며, 그 권한을 확대하였다.

---

172)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2012.11., pp.7-9.
173) 의안번호200686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2017.05.1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변재일의원 대표발의안[174)]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안은 전술한 '소병훈의원안'과 동일하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하여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는 현행 구조처럼 다수의 부처가 상이하게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관 부처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고 통일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지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의 일괄적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진행을 제시한 개정안은 일관되고 통일적인 개인정보의 보호가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한편, 미국, 일본 등에서는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개인정보 보를 수행하는 분권형 추진체계를 두고 있고, EU 등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별도의 전담기구를 통한 일원화된 추진체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현행의 분권형 추진체계와 개정안의 일원화된 추진체계 중 어떤 방법이 보다 효율적이고 적합한지에 관한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업무의 혼선, 행정업무의 과부하 및 예산·인력낭비 등의 급격한 일원화 추진체계로의 변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중장기 계획 등을 통하여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검토하고 있다.[175)]

다. 조원진의원 대표발의안[176)]

본 개정안은 앞서 본 다른 개정안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그대로 두고 권한만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의되었으나, 제19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현행과 같이 심의·의결하는 권한에 한정하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또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한 정책, 제도의 도입·변경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

174) 변재일의원안(각주161).
175)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앞의 보고서(각주172), pp.12-14.
176) 조원진의원안(각주16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또한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있어서도 ①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②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③심의·의결한 사항에 있어서 관계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며, ④그 이행을 점검하는 권한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직접 수립하며,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관리 수진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강은희의원 대표발의안[177)]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내에 각각 법령정책 특별위원회와 분쟁조정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각각의 위원장을 정하고 이를 보조하기 위한 사무처장을 두도록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으나, 제19대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 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에에 관하여 필요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①현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한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제도 개선, 법령 해석, 공공기관 간 이견 조정 등 업무 성격상 독립성 및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이를 공무원으로 정한 점, ②개정안 상 법령정책 특별위원회의 업무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고유 업무로써 실시되고 있는 바, 이를 특별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이 조직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 ③개정안 상 분쟁조정 전문위원회가 사법절차에 준하는 분쟁해결 기능을 수행한다면 독립성이 요구된다는 점, ④분쟁조정 전문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보고가 이뤄져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있어서 신속한 권리구제가 불명확하다는 점 등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였다.[178)]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은 현행 행정자치부 소관의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새로운 기능 및 권한을 신설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기능으로는 ①기본계획 수립권한, ②자료제출 요구권, ③의견제시권이 있으며, ❶입법영향분석 보고서의 작

177) 강은희의원안(각주161).
178)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강은희의원안)」, 2015.04., pp.86-9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성 및 국회제출 권한, ❷법률안제출계획의 심의·의결 권한, ❸개인정보의 국외 제공에 관한 사항 및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새롭게 추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견제시를 통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에 있어서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법규를 통합함에 있어서 각 개별법 상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통합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79]

3. 손해배상 관련

가.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안과 이상직의원 대표발의안[180]

본 2개의 개정안은 전술하였듯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 등으로 정보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손해배상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본 개정안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당 위법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있어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으로부터의 의견청취 및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자세한 사항에 있어서 시행령으로의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

나. 박대동의원 대표발의안[181]

해당 개정안은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기업 등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제정이유로 밝히며,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주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하여 보험 가입 또는 금융회사에의 자산 예탁을 통하여 피해배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조항의 신설을 발의하였으나, 제19대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

179)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앞의 보고서(각주178), pp.91-97.
180) 이학영의원안(각주166); 이상직의원안(각주162).
181) 의안번호190938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2014.02.1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39조의2를 신설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에 자산을 예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정보처리자는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규정 또한 신설하고 있다.

제3절 개인정보 침해 구제법제의 개선을 위한 제언

1. 개인정보 등급의 설정

제19대국회부터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통상적 방법에서 벗어나 사이버 상에서 이뤄지게 되는 바, 사이버 상의 위협 및 도발에 철저한 대비를 하기 위하여 “국가 사이버 안보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쟁점사항 중 한 가지는 과연 어떤 정보가 국가 사이버 안보에 관한 중대한 비밀일까에 대한 논의로써 국가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함과 동시에 위협정보에 대한 비밀등급 및 등급별 비밀에 따라 공유 가능한 기관의 요건에 대하여도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82] 국내 비밀분류는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바, 「보안업무규정」, 「군사기밀 보호법」, 「정보공개법」, 「대통령기록물법」등에서 등급별로 비밀을 분류하고 있다.

예컨대, 국민 개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와 연예인, 정치인, 대통령 등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과연 동일한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인격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가치가 있을 수 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른 가치로 의제되어 손해배상금액을 책정함에 있어서도 사회적 지위가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주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개의 개인정보에 있어서의 기본적 가치는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대통령과 연예인, 일반 민간인 등 사회적 지위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의 차이는 존재하는 바,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적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저자는 그 개인정보의 객관적 가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인 바, 이를 규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손해배상금의 책정에 있어서 항상 고려되는 사항은

182) 정준현,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총력적 대응체계를 위한 법제방안”, 「성균관법학」 제28권제4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12., p.4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였는지가 고려되는 바, 이에 있어서 우리는 매번 '비식별화'에 관한 논의만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비식별화가 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식별자는 이름, 주소, 날짜정보(생일, 자격취득일 등),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사회보장번호, 의료기록번호, 건강보험번호, IP주소, 생체정보, 얼굴 등에 대하여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나,[183] 개인정보 자체의 등급분류를 통하여 그 경중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위의 예시와 같이 각각의 개인정보주체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개인정보의 가치가 상이할 수는 있으나, 법원에서 정하는 손해배상금에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자체에 등급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법률요건을 정하면 그 효과가 정확히 발생할 수 있게 예컨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금액은 최소 10만 원으로 한다.'와 같이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정부분 법률로써 제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판례의 해석에 따라 개인정보의 등급을 분류할 수도 있으나, 「(가)비밀분류법」과 같이 개인정보 항목 자체를 등급으로 분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관리를 하게 된다면 개인정보주체의 피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책정에 있어서 간편할 것이며,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각 등급에 따른 보안정도를 정함으로써 개인정보 피해 발생에 있어서 항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법원 또한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유출 그 자체로 문제시 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유출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악용되거나 오·남용되었을 때 문제시 될 수 있는 정보로써 결합이 용이한 정보 등 식별가능성, 결합가능성 등 다양한 방면의 고려를 통하여 개인정보 자체를 분류하여야 할 것이며, 각 조항에 예시규정 또는 별표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분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상 쟁송제도의 개선

가. 단체소송제도의 개선

우리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

183) 한국인터넷진흥원, 「Power Review」, KISA Report, 2016.05., p.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것과 같이 분쟁조정제도와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단체소송제도는 그 목적과 존재의의가 상이함에도 이를 함께 연계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방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체소송은 다수의 사람들과 많은 이권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바,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비용적 문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약식쟁송의 방법을 거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중재역할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바, 명확한 사실관계만을 확정할 뿐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상반된 주장에 있어서 특별한 조사 없이 “양측의 주장이 상이하고,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음‘이라고 의견제시를 하여 보다 사실관계의 확정을 위해서는 소송절차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의 침해를 받은 개인정보주체들은 분쟁조정제도보다는 단체소송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 바, 현행과 같이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규정하고 있다면 양 제도 모두 형해화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단체소송을 인정하고 있는 바, 만약 개인정보주체 단체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불만족하게 될 경우에는 귀결적으로 단체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과연 단체소송의 제소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및 한계로 인하여 ‘제2절 개인정보 침해 구제 논의’에서 전술하였듯 ‘집단소송의 도입’ 또는 ‘단체소송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학영의원안·이상직의원안에서는 집단소송을 도입하고 있으나, 현행 단체소송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바, 다른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 권익구제 및 재판청구권에 있어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단체소송의 원고적격 및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권익구제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학영의원안·이상직의원안과 같이 개인정보 단체소송,[184] 총원, 구성원, 대표당사자 등 단체소송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며, 제57조2 이하에서 원고적격, 소송대리인 등에 관하여 소송절차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184) 개정안의 집단소송과 같은 것으로 의제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점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변재일의원안에서는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대상을 '정보주체의 재산적 피해 구제 및 권리침해'로 확대하는 점은 개인정보주체의 권익구제를 위한 방법으로 좋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우려한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소송유형으로 이를 신설하는데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본 저자는 당사자처분권주의란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를 개시·계속·종결은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맡겨지며 이의 행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나, 단체소송의 경우 원고가 다수가 되는 것에 해당하며, 원활한 소송의 진행을 위하여 대표를 선출하는 것일 뿐, 해당 소송의 원고는 개인정보주체 각각이 될 것인바, 이를 우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편,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침해는 개인정보주체에 재산적 피해를 주기도 하나, 이는 통상적으로 2차적 피해에 해당하는 것이며, 침해 자체로 발생하는 피해는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변재일의원안과 같이 재산적 피해 및 권리침해의 규정을 통하여 정신적 피해까지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나, 재산적 피해 및 권리침해가 반드시 정신적 피해까지 야기하거나 전제되는 것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권은희의원안의 경우, 원고적격을 완화하고 있는 바, 단체소송의 활발한 운용을 위하여 타당한 개정안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 단체소송은 인터넷 상에서의 카페 신설, 홈페이지의 신설을 통해서 다수의 피해자 발생에 있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원고적격에 관하여는 법원에서 심리를 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법률로써 엄격하게 정하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하는 고민이 있다. 따라서 개정안처럼 「소비자기본법」을 준용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만 규정한 것은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바람직하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요건으로 할 필요성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를 일반 '소비자단체'로만 구성하게 될 경우 남소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나, 단체로 구성된 원고의 수로써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는 바, 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개인정보 보호법」 상 단체소송 제도의 엄격한 제소요건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185] 상의 단체소송을 활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이를 참고하여 단체소송 제도를 개선하게 된다면 「개인정보 보호

185) 「소비자기본법」(법률 제14139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법」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절차의 일반법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대한민국국회 및 학계에서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인정보주체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표 8>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비교

구분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대상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u>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u>(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u>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u>(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구분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제소 요건	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것 ②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제54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개선

(1) 손해배상책임 관련 입법안에 관한 제언

‘제2절 개인정보 침해 구제 논의’에서 서술한 이학영의원안·이상직의원안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로 행정자치부장관에 신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사항의 의견청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취 및 조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사에 있어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만을 듣고, 제출된 자료에만 한정하여 사건개요를 파악하고 있기에 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 사건을 조사하라는 권한을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한다고 하여도 그 범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손해배상명령은 처분성을 가지게 되는 바,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배상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는 실제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권리구제를 늦추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모른다.

한편, 박대동의원안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하거나 금융회사에의 자산 예탁 등을 통하여 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또는 자산 예탁 등의 방법은 개인정보주체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 및 자산 예탁을 실시하는 비용을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보안하고 보강하는데 쓰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소상공인 등 영세업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대기업과 같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즉시 납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가진 경우에도 보험 가입 및 자산 예탁을 강제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2) 과실책임의 확장

우리 소송법상 대원칙으로써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는 바,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만큼의 책임을 지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 관념상 타당할 것이다. 오늘날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침해는 해킹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의 직원·용역업체 등의 피용자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해킹 등의 외부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완비, 내부유출 방지를 위한 피용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2항에서는 2015년 7월 23일까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생책임을 감경 받을 수 있다."[186]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변론주의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인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와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곤란하고,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피해 액수의 산정이 어려운 바, 개인정보주체의 권리구제에 제약이 생긴 바, 2015년 6월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의 대안[187]으로써 삭제되었다.

그러나 과실책임의 원칙이 특히 민사소송에 있어서 대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과연 개인정보주체의 최대한의 권리구제에 가장 이상적으로 적합한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첫째, 해킹 등의 외부침입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과연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저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대량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지라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원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는 경우, 해당 가해자에 배상할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주체의 구제에 제한이 되는 바, 개인정보처리자가 본인의 피용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용자책임으로 의제하여 무과실책임을 지되, 해당 가해자에게 구상권의 행사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준수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경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개인정보주체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개인정보처리자가 항변하여 본인의 책임경감을 주장할 필요성도 존재하는 바, 양자를 조화롭게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책임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생책임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우

186)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3423호)」, 2015.07.24. 시행.
187) 의안번호191573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전행정위원장대안)」, 2015.06.2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는 바, 불법행앞의 책임은 소멸될 수 있을지라도 계약관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소명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원에서의 손해배상금액을 책정함에 있어서 과실여부를 고려할 것인 바, 개인정보 침해에 있어서는 무과실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로써 과실책임을 규정하여 개인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양당사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의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3) 손해배상금액의 책정에 관한 논의

전술하였듯 손해배상금액에 있어서는 법정손해배상금액의 상한액 설정,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서 3배로의 제한은 개인정보주체가 배상액 확정에 대해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파산 등의 재산권 보호와의 균형성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긴 하나,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주체의 침해에 대한 완전한 구제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한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개인정보의 등급을 매기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저장·관리에 있어서 보호·보안의 정도를 정해주기도 하나, 그 등급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을 용이하고 납득할 수 있게 확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할 것이다. 예컨대, 식별가능성이 높은 개인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CCTV 등의 영상처리정보 등이 1급 정보로 규정되어 있다면, 1급 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통상피해액을 법정손해배상금액으로 항목 당 10만원으로 책정하고, 1급 정보 사항이 상호 결합된 경우 50%의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면, 개인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와 같은 당사자는 손해배상금액 책정에 대한 당위성을 납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적어질 수 있는 바, 이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업무 경감, 당사자의 소송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법원에서 8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고려하여 심사를 하고, 손해배상금액을 책정하는데, 반드시 3배라는 제한이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하였다. 예컨대 전술하였듯 무과실책임에 있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을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한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과실 책임의 원칙상 그 피해가 300만 원을 넘는다면 이는 분명히 배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의 등급을 규정하고, 각 등급에 따라 기본적인 피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금액을 법정으로 정하며,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직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판례가 성립되지 않았기에 법원에서 개인정보주체의 최대한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최대한 3배를 충족하여 판결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나, 배상액의 상한을 3배로만 규정하고 있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종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 또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예컨대, 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이 통상 10만원~30만원으로 정해지게 된다면, 이는 3배 배상을 통하여 30만원~90만원으로 책정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손해배상 금액보다 개인정보의 유출 및 2차적 활용이 보다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유리하다면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의미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5장 결론

(1) 오늘날 전 세계가 인터넷망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사회에서 가장 주요한 자원이 되는 것은 '정보'이다.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으나,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는 오늘날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정보의 재결합·재구성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으로써 역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 삶에 있어서 편의성과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주체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등 고객의 니즈(Needs) 충족이 가능한 시대로 인도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수집되고, 재구성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주체에게 유출 및 오·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시행되어,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동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침해에 있어서의 구제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침해는 개인정보주체에게는 인격권·명예권의 훼손이 발생하게 되며, 침해에 대한 구제 또한 금전배상으로 온전히 보전될 수 없어 유출 등의 침해 발생이 여타 다른 불법적인 침해행위보다 심각하다 할 것이다.

(2) '정보화 사회'는 공업 및 서비스 재화를 넘어서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주된 자원이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정보화 사회화되고 있고, 보다 앞서가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 예로 ①다양한 데이터의 수집·활용을 하는 빅 데이터, ②간편 결제 시스템 등을 위한 핀테크, ③의료 부문에 있어서의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스마트 의료 및 헬스 케어, ④사람의 지식을 통한 합리적 결론 도출이 가능한 인공지능 등의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바, 우리 「대한민국헌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령을 통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3)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KT 해킹 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번히 발생하고, 완전한 회복의 불가능, 다수의 대량의 정보에 대한 동시다발적 사고 발생, 직접 인지의 어려움 등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보장을 위하여 구제가 필수불가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구제방안으로 사전적 구제방안으로써의 금지청구권, 사후적 구제방안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금전배상,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의 활용 등이 마련되어 있다.

(4) 그러나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관하여 모든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개인정보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개인정보의 내용에 따라 그 가치의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는 한계를 지니며,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단체소송 또한 형해화되어 있고, 손해배상 금액의 책정에 있어서도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는 바,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구제에 제약이 되는 요소가 다분하다.

이에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제19대, 제20대(2017.05.25. 기준)에 걸쳐 총 11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특히 집단소송의 도입 및 단체소송제도 관련 개정사항, 행정자치부장관의 손해배상명령 및 손해배상 관련 보험의 가입·예탁제도의 운용 등 개인정보주체의 최대한 권리 구제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전부 국회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보안정도 및 개인정보 침해의 용이한 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등급을 책정하여야 하며, 단체소송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상한선을 조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또한 2017년 2월 13일, 헌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른바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각각 기본권 등의 비권력구조 사항, 권력구조 사항에 관하여 소위원회, 분과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다. 개헌안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으나, 우리 헌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은 어느 정도 일치된 듯하다.

우리 헌법 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제17조 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서 파생되고 확대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자기통제권에 관하여는 명시적 근거가 부재한 바, 학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미 판례를 통하여 성립되었기에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날, 미래의 4차 산업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이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함께 헌법적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판례를 통하여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을 인정하였고, 2012년 「유럽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비를 위한 준비를 우리도 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구제는 침해 사고 등이 발생한 이후에 빠른 대처도 중요할 것이나,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헌법에 규정하게 된다면 입법권자는 개인정보 보호 및 구제 관련에 있어서 개인정보주체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며, 개인정보처리자 또한 헌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다 신중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6)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한 개인정보의 침해를 회피할 수는 없는 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보호 및 구제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논문을 기술하였다. 각각의 법령에 따라 각각의 산업 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 또한 그 필요성이 존재하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의 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의 일반법적 역할을 하기에 최대한 많은 방법의 제시를 통하여 관련 법령에서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국회를 비롯하여 학계, 실무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심도 있고,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을 고찰하며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강경근, 「헌법학」, 법문사, 2004.
구자룡, 「알기 쉬운 핵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제1판, 신아사, 2012.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법문사, 2010.
_____,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김종현, 「정보보호 법제도와 보안정책 -보안사고사례분석과 사고예방을 위한 IT보안기술-」, 홍릉과학출판사, 2016.08.31.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9전정신판, 박영사, 2007.
변재옥, 「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성낙인, 「헌법학」 제14판, 법문사, 2014.
양건, 「헌법강의」 제6판, 법문사, 2016.
임규철,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북포유, 2013.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11판, 박영사, 2016.
지원림, 「민법강의」 제10판, 홍문사, 2012.
한상완, 「정보사회의 전개와 정보이용」, 구미무역주식출판부, 1997.
허영, 「한국헌법론」 전정13판, 박영사, 2017.

2. 국내논문

가. 학위논문

김민섭,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에 관한 법제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5.
오대한, “개인정보권의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15.

나. 학술지

고형석, “개인정보침해와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저스티스」 통권 제145호, 한국법학원, 2014.12.
김승한, "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의 한계와 개선방향”,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4권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 센터, 2013.02.
김태선, “미국 배액배상제도 및 법정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민사법학」 제66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국민사법학회, 2014.
류승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법학연구」 제47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02.
박경신, ""구글 스페인"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평석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유래를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20권제3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4.
박지용, “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0권제2호, 한국의료법학회, 2012.
서윤희·장영현, “잊혀질 권리의 도입과 적용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제2권 제3호,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6.08.
손정달,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9권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송동수·성기만,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토지공법연구」 제67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송오식,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합리적 구제방안 -사권으로서 개인정보권의 정립을 위한 시론-”, 「법학논총」 제36권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03.
심우민,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논점」 제28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1.
윤용석 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제12권제24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11.
윤주희, “개인정보 침해현황과 이용자 보호”, 「법학논총」 제33권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04.
이상명, “의료정보화와 의료정보보호”, 「법학논총」 제25권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이인곤,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점과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법률실무연구」 제2권 제2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4.10.
이인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와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1.
_____,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중앙법학」창간호, 1999.
이한주, “의료 제 문제의 공법적 해석”, 「법학연구」 제23권제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정순섭·양기진,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법제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정보연구」제1권제1호, 한국금융정보학회, 2012.02.
정준현,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총력적 대응체계를 위한 법제방안”, 「성균관법학」 제28권제4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12.
조만형,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제60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진대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근거와 피해구제제도”, 「INTERNET & SECURITY FOCUS」1,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0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법령 및 판례

가. 법령 및 법률안

(1)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3423호).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07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22호).
「소비자기본법」(법률 제1413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22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40호).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4113호).

(2)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의안번호190138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12.08.29.
의안번호190708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3.09.30.
의안번호1909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2014.02.03.
의안번호190938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2014.02.14.
의안번호191008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2014.04.07.
의안번호19111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4.07.11.
의안번호19123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대표발의)」, 2014.11.05.
의안번호1913932, 「개인정보 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2015.02.05.
의안번호191573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전행정위원장대안)」, 2015.06.24.
의안번호200506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2017.01.12.
의안번호200686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2017.05.11.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변재일의원 대표발의)」, 2014.02.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강은희의원안)」, 2015.04.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2012.1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 판례

대판 1998. 7. 24. 96다42789 판결.
대판 2005. 1. 17. 2003마1477 결정.
대판 2011. 9. 2.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고법 1996. 8. 20. 95나44148.
서울고법 1995. 8. 24. 94구39262.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등.
헌재 2009. 10. 29. 2008헌마257.
헌재 2015. 12. 23. 2013헌바68 등.

4. 기타자료

가. 공공기관 자료집 및 연구용역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16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2016.08.31.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개인정보 보호 상담사례집」, 2017.0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15년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2016.07.21.
국가정보원·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행정자치부, 「2016 국가정보보호백서」, 2016.04.
권현준 외,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04.22.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6년 정보보호실태조사 개인부문」, 2017.02.26.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6년 정보보호실태조사 기업부문」, 2017.02.26.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2012.09.
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Guideline」, 2013.07.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2017.01.
한국인터넷진흥원, 「Power Review」, KISA Report, 2016.05.

나. 언론기사

고동욱, “”주민번호 유출됐다면 오늘부터 변경 신청하세요“”, <연합뉴스>, 2017.05.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9/0200000000AKR20170529135800004.HTML?input=1195m.
권오성, “부모도 모르는 딸의 임신, 대형마트는 알고 있다”, <한겨레>, 2016.02.11., http: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9868.html.

길민권, “이베이, DB해킹으로 정보유출...비밀번호 변경 당부” <데일리시큐>, 2014.05.24.,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004.

김나한, “"주민등록번호 10원 가치나 있나"...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회의적인 사람들”, <중앙일보>, 2017.06.02., http://news.joins.com/article/21632529.

김연지, “여기어때, 中 탓하기엔 초보적 해킹에 숙박 날짜·장소까지 유출”, <노컷뉴스>, 2017.03.27., http://www.nocutnews.co.kr/news/4756402.

김예람, “SKT 최소 1억건 넘는 환자정보 - LGU+ 개인정보유출 잇따라”, <국제뉴스>, 2015.03.31.,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906.

김지수, “카드사 정보유출 국민검사 청구…집단소송도 제기”, <연합뉴스 TV>, 2014.01.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2&aid=0000045623.

문승관, “KB국민카드, 인공지능 적용 부정사용방지시스템 개발”, <이데일리>, 2017.03.07.,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3047126615861024&DCD=A00102&OutLnkChk=Y.

숙박앱 ‘어기어때’ 개인정보 99만 건 유출 확인”, <연합뉴스 TV>, 2017.04.27., http://www.yonhapnewstv.co.kr/tvscript/AKR20170427112000038/?did=2039m.

안상민, “개인정보 침해사고(신고) 현황”, 방송통신위원회, 2015.10.08.,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7030100&dc=K07030100&boardId=1015&boardSeq=41987.

윤건일, “SKT 환자 정보 수집 논란 ‘전자처방전’ 사업 철수”, <전자신문>, 2015.03.09., http://www.etnews.com/20150309000181.

윤석제, “국내 인터넷이용자 수 4364만명…스마트폰 보급률 85%”, <노컷뉴스>, 2017.01.30., http://www.nocutnews.co.kr/news/4724856.

이혜경, “의협, SK 전자처방전 중단 환영…모듈삭제 요청 “추가발행 위험 없애야””, <데일리팜>, 2015.03.17., http://www.dailypharm.com/News/195474.

좌영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여기어때’ 줄소송 전망...‘징벌 배상’ 첫 사례될까”, <이투데이>, 2017.04.28.,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85775.

전준범·심민관, “KT 보안불감증 여전…SNS(밴드)로 가입자 현관문 비밀번호 공유”, <조선비즈>, 2016.09.26.,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6/2016092601060.html?Dep0=twitter.

Alistair Barr, “Google Mistakenly Tags Black People as ‘Gorillas,’ Showing Limits of Algorithms”, <The wall street Journal>, 2015.07.01., http://blogs.wsj.com/digits/2015/07/01/google-mistakenly-tags-black-people-as-gorillas-showing-limits-of-algorithms.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용어 사전 등

네이버지식백과-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5.01.2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9117&cid=59086&categoryId=59092.

네이버 지식백과-자율주행자동차, 2015.06.0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9584&cid=59088&categoryId=59096.

문학비평용어사전-정보화 사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839&cid=41799&categoryId=41800.

생활법률상담-개인정보자기결정권,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Counsel-View?Serial=827.

위키백과-개인정보자기결정권, 2017.03.29., https://ko.wikipedia.org/wiki/%EA%B0%9C%EC%9D%B8%EC%A0%95%EB%B3%B4%EC%9E%90%EA%B8%B0%EA%B2%B0%EC%A0%95%EA%B6%8C,

라. 기타 검색 및 자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kopico.go.kr/intro/personInfoIntro.do.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독일연방헌법재판소, 15.12.1983 - 1BvR 209/83; 1BvR 269/83; 1BvR 362/83; 1BvR 420/83; 1BvR 440/83; 1BvR 484/83BVerfGE 65, page 1 ff.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주민등록번호' 올해 5월 30일부터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17.05.02., http://www.moi.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58363.

http://cafe.naver.com/nemo05/1455.

http://kfco.org/activity/notice.asp?mode=view&board_id=notice&idx=869&pageno=1.

http://nologout.blog.me/192173200.

http://privacy.kisa.or.kr/kor/privacy/privacy01_new.jsp.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the Remedies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Heo, Jun ho
Department of Constitu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dvisor: Professor Kim, Myeong sik

Today, we are living in a world where highly developed IT technologies are being used. Development of such IT technologies is making our lives smart and allows us to enjoy convenient and high-quality life. Collection and gathering of information which becomes the basis for IT technologies are indispensable means for providing customized service to the owner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atisfying the needs of customers, but may cause harm to the individuals due to infringement such as information leakage, abuse or misuse.

In particular,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may cause significant damage to personal rights and right of respect of the owners of personal information. Also, as it discloses a lot of information from many people, the extent of such damage is incalculable and full recovery cannot be achieved even through monetary compensation. Therefore, general law regarding th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as provided and the remedies for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was legislated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2011.

The right to prohibit is provided as a prior remedy to receive aid according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 claim for damages and personal information change (chang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forced since May 30, 2017 are provided as post remedy. On the other hand, as damage claim suits require significant time and money, a new prompt and simple remedy was needed. Thus, dispute mediation system through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s implemented. The committee recommends an agreement for system improvement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when it is accepted, the effect of consent judgment becomes valid.

Even though such prior and post remedies were provided, the owners of personal information were under restrictions on receiving remedies for the infringement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points out the followings as problems in the legislation of relief for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vagueness in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e-suit in class actions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system, absence of liability without fault in damage compensation and the provision of maximum amount of damage compensation.

Due to such problems,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is constantly proposing 「Legislative bill for partial amend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or the following purposes: the introduction of class actions or the amendment of matters related to class actions for personal information, reinforcement of authority and reorgan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Minister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order of damage compensation, purchase of insurance for damage compensation to personal information managers or the operation of deposit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ystem. Nevertheless, most amendments were discarded by the expi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becoming constraints for full remedy for the right of the owners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sent guidelines for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s and determining the amount of damage compens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by setting personal information grades.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an amendment for guaranteeing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for people without utilizing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system as the principle of pre-suit class ac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to relieve the fault lia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rs for damage compensation and discard the maximum amount to make a full preparation for the remedy for the rights of the owners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emedy for the protection and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discussed for preparation of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re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is gradually emphasized and the value of 'information' is actively utilized. Therefore, expert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legislators, academia and working groups are urged to pay more attention.

《 Key Words 》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remedy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mpens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system for personal information, class action

Collection @ chosun